

인권강사양성
연수과정자료

경찰 각급학교 교수요원 인권강사 양성과정

- ◇ 일 시 : 2005. 6. 27.(월) ~ 7.1.(금)
- ◇ 장 소 : 경찰종합학교(인천 부평)

목 차

1. 교육일정	1
2. 교육진행자	3
3. 프로그램 개요	
가. 인권교육 이해 및 인권보호 프로그램	5
나. 인권 감수성 키우기 프로그램	57
다. 갈등해결 능력 향상 프로그램	77
부 록	97
1. 헌법	99
2. 국가인권위원회법	122
3. 세계인권선언	142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48
5. UN 경찰관 행동강령	166
6. 국제사면위원회 경찰관 인권지침	168
7. 경찰의 인권침해 진정사례 정리	170

1. 교육일정

- ▷ 일 시 : 2005. 6. 27.(월) ~ 7. 1.(금)
- ▷ 대 상 : 총 20명(경찰 각급학교 교수요원 15,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요원 5)
- ▷ 시 간 : 총 35시간(4박5일, 식사시간 제외)
- ▷ 장 소 : 경찰종합학교

◆ 6월 27일 (월)

시 간	교육내용	교수방법 및 특징
09:00 ~ 12:00	마음열기 (고상준) 인권교육 이해 (고상준, 김철홍) 1. 인권교육의 접근원리 2. 인권교육 교수방법	자기소개 전단, 컨디션 온도계, 인터뷰 게임, 뗏목여행, 편집회의, 따로 또 같이, 강의안 작성 게임
12:00 ~ 13:30	점심식사	
13:30 ~ 17:30	경찰과 인권 Workshop (고상준, 양동훈) 1. 경찰 직업의 특성 및 활동환경/조건 2. 민원인에 대한 이해 3. 경찰과 경찰의 업무 그리고 경찰의 인권	카드 브레인라이팅, 요리조리, 전신사진, 그룹 브레인라이팅, 포토 스탠딩
18:00 ~ 20:00	앞풀이 (김철홍)	교육소감나누기 및 상호 의사소통

◆ 6월 28일 (화)

시 간	교육내용	교수방법 및 특징
09:00 ~ 12:00	인권보호하기 교수법 연습 1 (고상준) 1. 인권교육 모델 탐색: 교수경험 나누기 2. 경찰관의 인권보호 프로그램: 거리의 심판자 모델	별집, 번개, For-You Brain Writing, 문장퍼즐, 변호게임, 두 마음 토론
12:00 ~ 13:30	점심식사	
13:30 ~ 17:30	인권감수성키우기 교수법 연습 1 (김희은) 1. 경찰업무의 인권관련적 특성 이해 2. 시민/여성에 대한 이해	참여학습 : 체크리스트, 메타플랜, 작업기, 토론 및 발표, 편지 작성 등

◆ 6월 29일 (수)

시 간	교육내용	교수방법 및 특징
09:00 ~ 12:00	인권보호하기 교수법 연습 2 (고상준) 1. 경찰내부의 문화와 인권 2. 근무 장소와 대상에 따른 인권수호 방법 찾기	퍼즐, 퀴즈, 결정게임, 그리고 다양한 좌석배치방법 및 효과, 강의구성방법, 질문방법, 수사법 등을 익히는 시간
12:00 ~ 13:30	점심식사	
13:30 ~ 17:30	인권감수성키우기 교수법연습 2 (김희은) 1. 청소년 이해 2. 다양성과 차이 존중하기 : 외국인노동자를 예로	참여학습 : 찬반토론, 시나리오 쓰기, 모서리 게임, 이미지 작업 등

◆ 6월 30일 (목)

시 간	교육내용	교수방법 및 특징
09:00 ~ 12:00	갈등 해결능력 향상 교수법 연습(장윤경) 1. 갈등 드러내기 2. 갈등 유형 테스트 3. 문제해결 4원칙 배우기	카드 브레인라이팅, 개인간 갈등 유형 테스트, 팀별로 브레인스토밍, 발표 4가지 원칙에 대한 갈등상황을 예로들어 해결책을 찾아보면서 습득
12:00 ~ 13:30	점심식사	
13:30 ~ 14:30	의사소통 기술 향상 교수법 연습 (장윤경) 1. 적극적인 듣기 2. 바꾸어 말하기 3. 나 전달법	카드 브레인라이팅, 팀별 브레인스토밍, 발표
14:30 ~ 17:30	갈등 해결능력 향상 교수법 연습 (장윤경) 1. 협상 실습 2. 중재의 3원칙 배우기 3. 중재의 5단계 배우기 4. 중재 실습	시나리오를 익힌 후 역할극을 하고 발표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하여 중재 원칙과 과정 습득
18:00 ~ 20:00	뒤풀이 (김철홍)	교육소감 및 상호의사소통

◆ 7월 1일 (금)

시 간	교육내용	교수방법 및 특징
09:00 ~ 12:00	교육기획 연습 (고상준) 1. 교수설계 방법 2. 교육기획 방법 3. 교수방법의 순서와 배치, 중/대형 교수 방법	중/대형 교수방법으로는 [터부게임], [Vision Tour] 등을 소개
12:00 ~ 13:30	점심식사	
13:30 ~ 17:00	인권수호자로서의 경찰되기 (김희은) 1. 인권친화적 경찰조직되기 2. 인권지킴이로서의 나의 비전선언문 작성하기	참여학습 : 체크리스트, 퀴즈, 그림 그리기, 모의재판 등
17:00 ~ 17:30	1. 교육평가하기 (김철홍) 2. 수료식	연수 만족도 설문지 작성 등 표창 및 수료증 수여

2. 교육진행자

연번	소 속	성 명	전공분야	연락처	비 고
1	여성사회교육원	김희은	인권감수성	011-716-1973	“경찰인권교육방법” 저자
2	콘라드아테나위 재단	고상준	교수·학습방법	019-9486-6000	상 동
3	성폭력 상담소	장윤경	갈등 해결	017-260-3882	상 동
4	국가인권위원회	김철홍	인권교육	02-2125-9670	
5	국가인권위원회	김규홍	인권교육	02-2125-9675	
6	국가인권위원회	양동훈	진정사건조사	02-2125-9824	

□ 교재

- 경찰인권교육방법(국가인권위원회, 2003)
- 인권길라잡이-경찰편(국가인권위원회, 2002)

프로그램 개요 I

인권교육이해 및 인권보호 프로그램

진행 : 고 상 준, 양 동 훈, 김 철 홍

□ 프로그램 개요

참고: [자기소개 전단]과 같이 괄호호로 표시된 단어는 교수방법의 명칭임.

시 간	단계별 교육내용	교수방법 및 특징
6/27 (월) 09:00 ~ 12:00	마음열기 단계 인권교육의 이해 1. 인권교육의 접근원리 2. 인권교육 교수방법	1. [자기소개 전단], [컨디션 온도계], [인터뷰게임], [뗏목여행]: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교수방법들이다. 2. [편집회의]: 인권관련 법을 교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3. [따로 또 같이],[강의안 작성 게임]: 일방적 강의를 대체할 수 있는 참여형 방법이다.
6/27 (월) 13:30 ~ 17:30	Workshop:경찰의 특성과 인권 ◦ 경찰 직업의 특성 및 활동환경/조건 ◦ 민원인에 대한 이해 ◦ 경찰과 경찰의 업무 그리고 경찰의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d BrainWriting] • [요리조리] • [전신사진] • [Group BrainWriting] • [PhotoStanding] '사회 속의 경찰'과 '경찰의 인권관련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시간이다.
6/28 (화) 09:00 ~ 12:00	인권보호하기 1 ◦ 인권교육모델탐색:교수 경험나누기: ◦ 경찰관의 인권보호:거리의 심판자 모델	1. [별집], [번개], [For-You Brain Writing] 2. [문장퍼즐], [변호게임], [두 마음 토론]
6/29 (수) 09:00 ~ 12:00	인권보호하기 2 ◦ 경찰내부문화와 인권 ◦ 근무장소와 장소에 따른 인권수호방법	[퍼즐], [퀴즈], [결정게임], 그리고 다양한 좌석배치방법 및 효과, 강의구성방법, 질문방법, 수사법 등을 익히는 시간이다.
7/1 (금) 09:00 ~ 12:00	교육기획 연습: ◦ 교수설계 방법 ◦ 교육기획 방법 ◦ 교수방법의 순서와 배치 ◦ 중/대형 교수방법	중/대형 교수방법으로는 [터부게임], [Vision Tour] 등이 소개된다.

<자기소개 전단의 예>

지명수배전단

언제 사용이 가능한가?
• 자기를 혹은 파트너를 소개할 때
준비물은?
• A3용지크기의 종이 • 다양한 필기구 • 그림이나 사진이 많이 들어있는 잡지, 가위, 칼, 풀
예상되는 소요시간은?
• 약 1시간
이 게임의 특징은?
• ‘지명수배전단’ 즉 참석자에 대한 소개서가 교육기간 내내 붙어있기 때문에, 참석자들이 서로에 대해 더욱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

이름의 유래: 참석자의 신상정보 및 교육참여 동기, 바람 등을 기록한 뒤 벽에 부착시켜놓은 전단지가 마치 지명수배자를 공고한 전단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용목적: 참석자들이 서로의 신상정보를 알게 하고, 교육에 거는 기대나 바람을 한 번쯤 이야기하게 한다.

진행순서:

- ① 다양한 조편성 기법을 사용하여 참석자를 2인1조로 묶는다.
- ② 게임의 룰을 설명하고, 인터뷰할 시간을 준다.
- ③ 인터뷰가 끝난 참석자들은 파트너의 신상정보이나 특징, 참석동기, 교육에 거는 기대 등을 적은 전단을 만든다.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사진을 사용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진행자가 준비한 잡지나 화보에서 자신의 파트너와 같은 이미지의 그림 혹은 사진을 오려서 사용하면 된다. (주의: 반드시 사람의 얼굴일 필요는 없다. 만약 파트너가 단단한 이미지이면 ‘안전한 자동차’나 ‘탱크 냉장고’ 등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장의 사진을 손으로 찢어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다.)
- ④ 옵션: 완성된 수배전단 아래쪽에 ‘현상금’을 적을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이 그 수배자의 가격을 재미있게 써넣을 수 있다.

변이형:

- 반드시 수배전단일 필요는 없다. 어떤 직종에 사람을 뽑는 ‘직원채용공고’형식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 자신이 자신의 이미지를 선택한 뒤 내용을 채워 넣을 수도 있다. 가능하다면 미리 참석자들에게 파일을 보낸 뒤 완성하여 가지고 오도록 할 수도 있다.

여러분께 저를 소개합니다

이름:

거주지:

소 속:

경찰관으로서 현재 저의 관심은:

저의 주된 기관(단체)은:

저의 취미는:

저의 비밀을 한 가지 밝히자면: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을
오려서 붙여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경찰의 모습은:

제가 싫어하는
경찰의 모습은:

다른 참여자에게 하고싶은 말은:

<컨디션 온도계의 예>




컨디션 온도계 & 과녁을 쏘아라

‘컨디션 온도계’와 ‘과녁을 쏘아라’는 참석자들이 자주 들고나는 통로나 문에 부착해 놓은 일종의 설문지를 칭하는 명칭입니다.

‘컨디션 온도계’는 말 그대로 참석자들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 자주 사용한 방법입니다. 대략적인 형태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설문은 제가 만든 것이고, 그 다음 두개의 설문은 장애우와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위해 교육참가자께서 만든 것들입니다.

◆ 설문의 예 1

지금 당신의 컨디션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1 st Day	2 nd Day	3 rd Day
			
			
			

여성은 빨간색 스티커를,
남성은 파란색 스티커를
사용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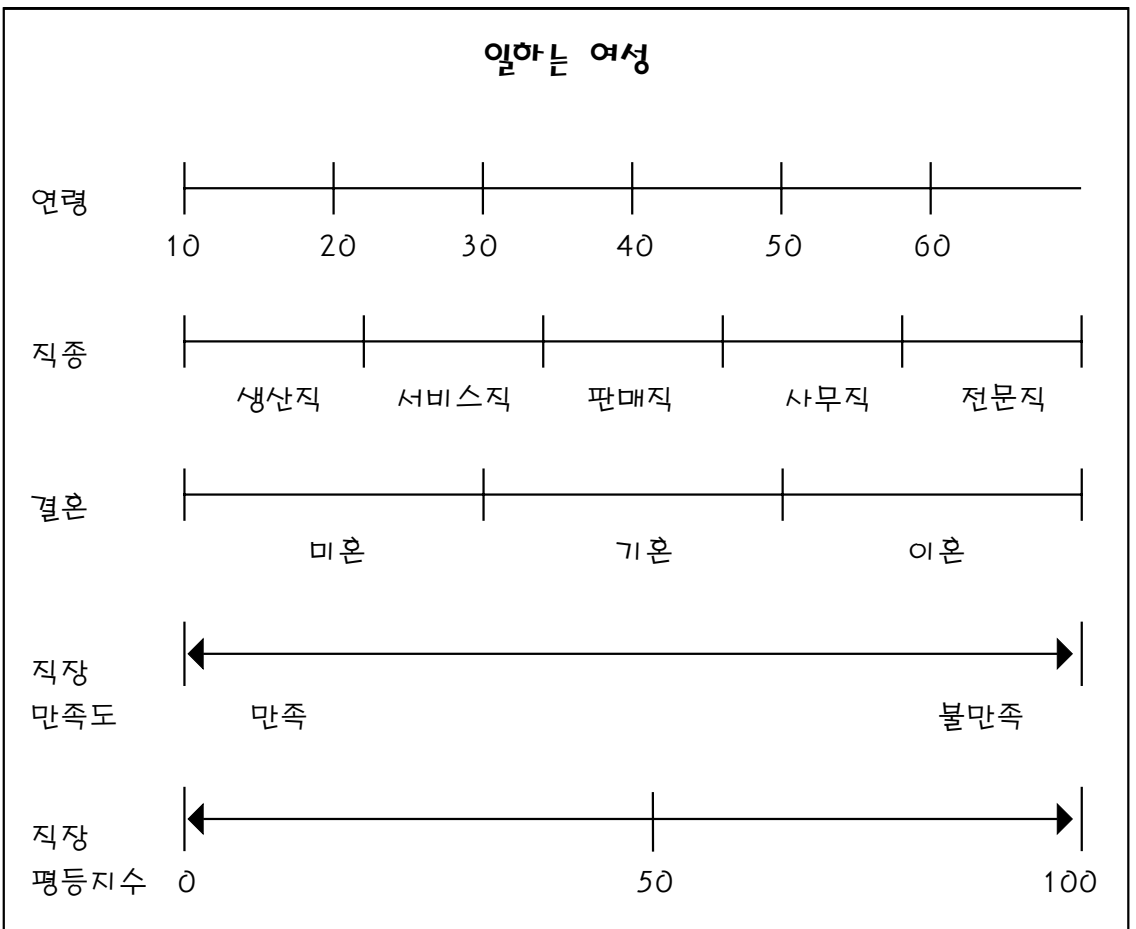
◆ 설문의 예 2

사용색상: 선천성 장애-빨간색 스티커, 후천성 장애-파란색 스티커

장애유형에 스티커를 붙이세요, 관심분야에 스티커를 붙이세요,

<u>신체장애</u>	<u>언어장애</u>	<u>보건(의료)</u>	<u>정책</u>
<u>시각장애</u>	<u>청각장애</u>	<u>직업</u>	<u>교육</u>
<u>정신지체</u>	<u>정신박약</u>	<u>재활</u>	<u>결혼</u>
<u>신장장애</u>	<u>기타(중복장애)</u>	<u>단체</u>	<u>기타</u>

◆ 설문의 예 3



<자기소개게임의 예>

이름표게임

언제 사용이 가능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열기’
준비물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름표속지: 교육에 사용할 이름표크기의 종이
예상되는 소요시간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이 고등학교 이상의 성인 20-30명일 경우 약 40-50분
이 게임의 특징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른 시간 내에 참석자들이 친해진다. • 교육기간 내내 별명을 기억하고 사용한다.
진행순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모든 참가자가 교육장의 중앙에 동그랗게 모여 선다. ② 다른 사람의 이름과 신상내역이 적힌 이름표를 무작위로 나누어 준다. ③ 모든 참가자들은 그 이름표의 주인이 자신인 양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눈다. ④ 충분히 인사를 나누었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이름표의 주인이라 여겨지는 사람에게 이름표를 준다. ⑤ 정말 그 이름표의 주인인지를 확인한다.

1. 기본형 ‘이름표게임’: 서로를 잘 모르는 10~20명의 성인교육이라고 가정한다.

- 준비물은 참가자들의 이름표다. 대부분의 교육에서 그러하듯 참가자들의 이름표를 준비한다. 평상시의 경우와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규격이 약간 크다는 것이다. (12 x 10 cm 정도)
- 이름표의 한 면에는 이름을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크게 쓰고, 다른 한 면에는 취미, 특기, 나이, 사는 곳, 출신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색상 등 그 사람을 손쉽게 나타낼 수 있는 정보를 기입한다. 물론 이 정보는 이미 참가신청을 할 때 받아두어야 한다.
- 참가자들은 교육이 시작된 후에야 이름표를 받는다. 그것도 무작위로. 즉 이름표를 뒤섞은 다음 무작위로 한 장씩 나누어 주는 것이다.
- 참가자들은 자신이 받은 이름표의 뒤에 적힌 정보를 암기할 시간을 가진다. 정보의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3-5분이 적당하다.
- 참가자들이 이름표의 내용을 다 암기한 후 진행자는 게임의 법칙을 설명한다. 대략 다음과 같다:

“이름표를 가슴에 부착하십시오. 네- 아주 보기 좋습니다. 누구의 이름인지도 모르는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계신 기분이 어떠십니까? 자, 지금부터 모두 일어나셔서 마음대로 다니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십시오. 물론, 진짜 자신은 감춘 채 가슴에 달고 계신 그 분, 분명히 우리들 중에 계신 ‘이름표의 주인’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단, 주의할 사항은 혹시 인사를 하고 다니시다가 자기 이름표를 만나더라도 절대 아는 척 하거나 눈치채게 하시면 안됩니다. 아셨죠! 눈치를 보니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오늘 지각하신 참가자께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그렇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기의 가짜-이름, 취미, 특기, 나이, 사는 곳, 출신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색상 등 소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작!”

- 가능하면, 자기 앞사람에게만 신경을 집중할 수 있도록 경쾌한 음악이 조금은 크게 들리면 좋겠다. 거의 인사가 끝난 것 같으면 음악을 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대화가 멈추게 되어있다.
- 이제 이름표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시간이다. (만약 시간이 없다면 돌아가며 자기 이름표를 찾아가도록 한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맨 앞에 계신 분, 잠깐 일어나시죠. 어때요, 재미있으셨나요? (답을 들은 뒤) 모두 자신이 가지고 계신 이름표의 주인도 만나셨겠네요? 표정을 보니 대충 눈치를 채신 것 같은데…… 그럼 첫 번째 참가자께서 먼저 이름표의 뒷면을 크게 읽어 주시죠. (읽는다) 좋습니다. 그럼 그분이라고 생각되는 참가자에게 직접 갖다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이름표를 주인이다 싶은 사람에게 갖다 주도록 한다. 여러 장을 받는 사람도 생기고 한 장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서로의 면면을 익힘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는 “역할게임”에 천천히 적응해 가게 된다.

2. 변이형 ‘이름표게임’:

모든 참가자가 원형으로 둘러 앉는다. 참가자들이 직접 이름표의 앞과 뒷면을 적는다. 다 적었으면 이름표를 섞은 뒤 다시 한 장씩을 꺼내 갖는다. 한 명씩 돌아가며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을 소개한다. 물론 이름표의 인물이 자신인양 하면서.

자기소개가 모두 끝나면 자기가 가진 이름표의 주인을 추측하고는 이름표를 주는 방식은 동일하다.

<뗏목여행에 대한 설명>

뗏목여행

언제 사용이 가능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자들의 마음을 열고, 사권의 시간을 주고자 할 때• 특히 교육기간 내내 함께할 조원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할 때• 교육에 참가한 목적과 바람을 확인하고자 할 때
준비물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포지, 전지, 다양한 색상의 카드• 다양한 필기도구 (매직펜, 크레파스 등)
예상되는 소요시간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명을 5-6조로 구성한 경우 발표시간까지 포함하여 약 1시간 30분 정도
이 게임의 특징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열기와 주제로의 접근을 할 수 있다.
진행순서
① 게임설명 ② 조별활동 ③ 결과물의 발표

이름의 유래: 뗏목을 타고 (교육이 목표로 삼은) 목적지로 향한다는 의미에서 “뗏목여행”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사용목적:

- 참석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자 할 때
- 참석자의 특기와 개인적 비전에 대해 알고자 할 때
- 교육주제와 관련된 참석자의 바람을 모아내고자 할 때

진행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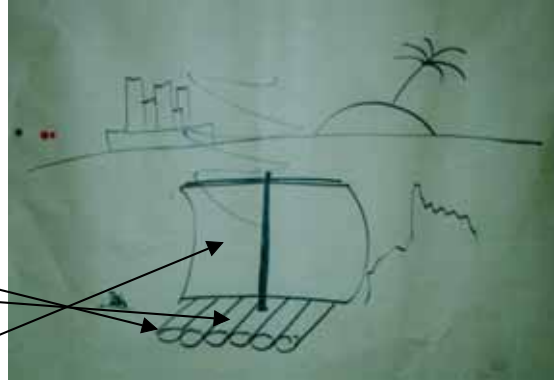
- ① 먼저 원하는 수의 조를 편성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를 남은 교육기간에 계속 유지하는 것도 때로는 효과가 있다.
- ② 게임의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참석자들에 설명을 한다.
- ③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전지나 소포지에 커다란 뗏목을 그린다.

그리고 각각의 통나무에 끝에는 조원들의 이름을,

통나무의 옆면에는 인적사항 등을,

뗏목에는 조 이름을 적은 후,



남은 여백에 그림이나 이미지 혹은 글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조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연결로 이루어진) 이 통나무 배가 나아가는 미래의 상과 비전을 그린다. (예로 제시한 그림은 송창석 박사님의 “새로운 민주시민 교육방법” CD에서 빌려왔어요.)

그림을 그려 넣기에 앞서 들은 테마와 관련해 가슴속에 남은 개개인의 인상들을 브레인스토밍이나 마인드 맵을 사용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다.

④ 그리기가 완성되면 전체로 모여 각 조의 결과물을 발표한다.

사용의 예:

앞선 설명에는 뗏목이라 했지만 실제의 진행에서는 탈 것이면 어떤 것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차나 열기구 혹은 우주탐사선을 선호하시더군요.

<따로 또 같이 설명>

따로 또 같이(원제: Jigsaw)

Jigsaw모형은 복수의 이질집단들이 집단 별로 교육내용을 한 영역씩 나누어 맡아 팀 별로 학습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다른 팀들의 학습을 책임지는 협동 학습모형으로 협동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학습자들은 다른 부분을 떼어 받은 다른 학습자들로부터 그 부분에 대하여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모형은 이름은 그림 짜 맞추기 퍼즐(Jigsaw puzzle)처럼 팀 별로 학습한 내용의 전개가 모두 끝나야 학습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다.

Jigsaw 모형에 의해 단원 학습이 끝난 후 학생들은 시험을 보고 개인의 성적대로 점수를 받는다. 그 시험점수는 개인별로 집계되고 집단 점수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Jigsaw 모형은 과제해결의 상호의존성은 높으나 보상의존은 낮다. 따라서 집단으로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집단목표가 없다. 그러나 각 집단구성원의 적극적인 행동이 다른 집단구성원들에게 보상 받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협동적 보상 구조의 본질적 역동성은 존재한다. (Aronson. et al.1978)

수업절차

학 습 과 정	교수·학습활동 방법	자료 및 유의점
문제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유발 ▪ 선수학습 상기 ▪ 공부할 문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세트 녹음기
원 팀 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주제 선택 ▪ 전문가 개인별 소 주제 할 당 ▪ 해결 방법 안내→전문가 학습지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안내도 ▪ 전문가 학습지
전문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팀 별 구성→과제 해결 ▪ 전문가 별 전문가 학습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백과사전 ▪ 전문가 학습지
원 팀 별 상호 동료 교수·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 팀 재구성→전문가 별 발표 ▪ 팀 별 상호 책임 교수 	
학습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정리 ▪ 차시 예고 및 예습과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 워드캠
평가 및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평가 점수에 의한 팀 별 점수 산정 ▪ 팀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 별 보상 자료

<강의안 작성게임에 대한 설명>

강의안 만들기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강사의 사정이나 단체의 여건으로 인해 어려운 강의원고만을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이 경우 어렵게 모인 참석자들에게 “강의원고를 함께 읽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하기도 그렇고, “각자가 알아서 강의원고를 읽어보시오!” 하기도 뭐하다. 이럴 때 “강의안 만들기”를 해보자.

- 조를 편성하고
- 강의원고를 분석하여 구조와 골격을 나누어보게 한 후
- 만약 자신들이 교육에 투입된 강사이고 임의로 교육을 받는 집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새 강의안을 만든다.
- 강의안은 대상집단에 따라 난이도와 구조, 단어선택과 예시가 달라져야 한다. 또 강의안에 구조나 성격에 따라 교육기자재의 선택도 달라진다.
- 다 만들어진 강의안은 조별로 소개하게 하고, 전체가 그 구성이나 내용에 대해 토론한다. 이때 서로 원래의 강의원고를 다르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다.

“진정서 만들기”

우리는 억울한 사람이 무고하게 투옥되었거나 꼭 필요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의 이름을 빌어 진정서를 만든다. 그런 진정서를 조금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보자.

- 먼저 모든 참가자가 함께 부패의 주범이 되는 인물들의 전형을 설정한다.
- 5-6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조를 편성한다.
- 각 조는 자신들이 원하는 한가지의 인물전형을 실제 현실 속의 인물로 만드는 작업을 한다. 즉, 구체적 나이와 직업, 거주지와 가족상황, 성격과 신체조건, 그 외에도 그 인물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환경적 요소까지 꼼꼼히 정리한다.
-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인물을 가지고 진정서를 만든다. 이 때 진정서는 가능하면 재미있게 작성하도록 유도하라. 그림이나 도표, 사진, 개인적 전력, 눈물로 호소하는 절절함까지 섞어서 실제의 부패를 객관화할 수 있도록 해본다.
- 진정서가 만들어지고 소개가 끝나면 이런 과정을 통해 새삼스럽게 발견한 면, 새롭게 이해된 것들, 막연하고 일방적 비판에서 놓치고 지나간 것들에 대해 전체 토론을 하거나 강의로 이어간다.

<다양한 Brainwriting의 예>

Brainwriting

언제 사용이 가능한가?
• 어떤 주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생각을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정리해내고 싶을 때
준비물은?
• 전지와 소포지 + 필기도구 혹은 • 모더레이션카드 + 필기도구
예상되는 소요시간은?
• 아무리 작은 주제라도 40분-1시간이 소요된다.
이 게임의 특징은?
• 짧은 시간에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낼 수 있다.
진행순서
아래에 서로 다른 네 가지의 예를 정리해 놓았다.

이름의 유래:

머리(Brain)에 들어있는 아이디어를 글로 적는다(writing)는 의미에서 이름이 유래하였다.

사용목적:

Brainwriting은 Brainstorming과 마찬가지로 아이디어를 모아내는 작업이다. 차이가 있다면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말로 발표하는 Brainstorming는 달리 Brainwriting은 글로 적어낸다는 점이다.

진행순서:

여기서는 네 가지 형태의 Brainwriting을 소개한다.

A4 브레인라이팅

- A4 브레인라이팅은 2인1조, 4조1팀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 두 명을 한 조로 하고 네 개의 조를 한 팀으로 묶어 조편성이 끝나면 진행자는

이미 주제가 맨 위에 적혀있는 종이(A4용지)를 모든 참여자들에게 한 장씩 나누어 준다.

- 종이를 받은 참여자는 혼자서 주제에 대해 떠오르는 모든 아이디어를 적는다.
- 아이디어를 모두 다 적은 참여자는 파트너와 함께 각각의 아이디어를 비교해 본다. 이때 가장 먼저 발견된 공동의 아이디어를 OHP 필름에 적은 후 옆 조로 전달한다.
- OHP 필름을 넘겨받은 다음 조에 속한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파트너가 함께 내린 공동의 아이디어가 이미 OHP 필름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없으면 계속해서 자신들만의 아이디어를 적은 후 다음 조에게 넘겨준다.
- 이런 식으로 팀에 속한 모든 조가 답이 완전히 적을 때까지 쓰기를 계속한다.
- 각 조별로 다른 주제가 적힌 종이를 나누어 줌으로써 다양한 주제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짧은 시간에 모을 수도 있다.

Group 브레인라이팅

- 5-6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조를 편성한다.
- 각 조에는 전지나 소포지를, 그리고 모든 참가자에게는 매직펜을 나누어준다.
- 참가자들은 조별로 자신들이 받은 소포지를 중앙에 놓고 둘러 선다. 소포지의 중앙에는 이미 그 조가 다룰 주제가 기록되어있다.
- 참가자들은 그 주제에 대해 생각나는 데로 단어들을 기록한다. 기록에는 어떤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에게 기회는 균등하다.
- 진행자는 참가자들이 일차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다 써넣은 것처럼 보일 때를 기다린다. 그리고 그 순간 종이를 중심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써넣었는지를 읽어보게 하라. 그리고 남의 아이디어를 통해 떠오르는 두 번째 아이디어를 기록하게 하라.

Card 브레인라이팅

- 5~6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조를 편성한다.
- 각 조원들은 3~8장의 카드를 받는다. (적어도 3개 이상의 아이디어를 기록해야 한다.)
- 참가자들은 주제에 대해 생각나는 데로 단어들을 기록한다. 기록의 원칙은 “1 Card, 1 Idea”이다. 아이디어는 큰 글씨로 적는다.

- 진행자는 참가자들이 아이디어를 다 써넣은 것처럼 보일 때를 기다린다. 그리고는 조별로 분류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 분류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 사람이 자신의 카드를 소개하고, 순서대로 놓는다. 이 때, 다른 범주에 속하는 내용의 카드는 횡으로, 같은 범주에 속하는 카드는 종으로 놓는다. 첫 사람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도 같은 방법으로 분류를 계속한다.
- 분류가 다 끝나고 나면, 각 범주의 맨 위에 범주이름을 정하여 다른 색상, 혹은 다른 형태의 카드를 사용하여 적어 넣는다. 그리고는 그 분류 전체를 스카치테이프에 연결한다.
- 이렇게 분류된 범주는 조별활동의 도구나 토론의 내용으로 사용된다.

For-You 브레인라이팅

- 2인 1조로 조를 편성한다.
- 각 조의 1번은 주제에 대해 생각나는 데로 이야기한다. 1번의 임무는 (질보다 양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 각 조의 2번은 1번이 쏟아내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 속에 담긴 아이디어와 문제점 등을 단어로 기록한다.
- 1번의 발표가 다 끝나면 이제는 2번이 발표하고 1번이 기록한다.
- 이렇게 정리된 아이디어를 필요에 따라 분류하거나 수합한다.

사용의 예:

이렇게 모아진 아이디어는 교육의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데 아주 소중한 기초자료가 된다. 예를 들어 브레인라이팅 다음 단계가 마인드 맵이면 브레인라이팅한 전지를 옆에 놓고 그 안에 쓰여진 아이디어를 한가지씩 지워가며 마인드 맵을 완성할 경우 모든 생각들을 빠짐없이 마인드 맵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Mind-map 이외에도 <요리요리>, <그리드글짓기> 등의 단계를 연결할 수도 있다.

다음의 사진은 Brainwriting이 끝나고 난 후 Mind-map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요리조리의 설명>

요리(料理)조리(調理)

언제 사용이 가능한가?
• 어떤 사건이나 개념의 구성이나 구조에 대해 알고자 할 때
준비물은?
• 소포지, 전지와 필기도구
예상되는 소요시간은?
• 20-30명으로 구성된 교육일 경우 발표시간까지 약 2시간 정도가 필요하다.
이 게임의 특징은?
• 정말 재미있다. • 구성을 살피기가 어려운 사건이나 개념도 쉽게 풀어낼 수 있다.

이름의 유래:

어떤 사건이나 개념을 김치찌개나 구절판 등의 ‘요리’라고 가정하고, 그 구성이나 구조를 마치 조리법처럼 풀어 단계적으로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이름이 붙여졌다.

사용목적:

이해가 어려운 사건의 구조나 개념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

진행순서:

- 5-6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조를 편성한다.
- 교육의 주제를 가지고 전체토론을 진행한다. 그리고 토론과정에서 주제를 구성하는 요소를 10-15가지 정도 골라낸다.
- 각 조는 이렇게 선택된 10-15가지의 소재를 대상화하여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한다. (물론 단숨에 10-15가지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는 말은 아니다. 한가지씩 차근차근 짚어나가게 하라.)
- 이렇게 하면 각각의 소재를 구성하고 있는 내부요소가 눈에 보일 것이다. 예를 들어 소재 중 하나가 ‘학부모의 촛지’라 할 경우, 이와 관련된 교사, 학부모, 치맛바람, 봉투, 내신성적 등 그 소재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단어들 이 드러날 것이다.

- 이제 요리의 이름을 ‘학부모 촌지 탕’이라 명명하고 브레인스토밍으로 찾아낸 내부요소들을 요리재료로 삼아 조리순서를 만든다.
- 이렇게 만들어진 요리명과 조리법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큰 종이에 기록하고 전체에게 소개한다. 이 때 음악을 곁들이면 한 층 재미있는 설명이 가능하다.

사용의 예:

다음의 예를 보면 <요리조리>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별집에 대한 설명>

별 집

언제 사용이 가능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할 내용 혹은 교육된 내용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싶을 때 • 어떤 주제나 사건 혹은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할 때
준비물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예상되는 소요시간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명의 파트너와 이야기하는 시간은 약 5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그 후에는 발표를 듣는 시간이므로 나머지 소요시간은 진행자의 재량에 달려있다.
이 게임의 특징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집’은 건드려 놓은 듯 조금은 소란스럽다.
진행순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참석자들을 앉은 위치에서 주위의 사람과 둘 혹은 셋씩 짝을 짓도록 한다. ② 토론주제를 제시한다. 각 조는 주어진 주제에 따라 토론을 진행한다. ③ 공동의 의견이 수렴되면 대표자가 그 내용을 전체에게 소개한다.

이름의 유래: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세요?”라는 물음에 이어지는 어색한 분위기 - 강사나 교육 진행자에게 적잖이 걸림돌이 되는 요소다. 이런 원치 않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교육방법이 ‘별집’이다. ‘별집’은 말 그대로 ‘별집을 쭈셔놓은 것처럼 참여자들이 붕붕대며 이야기를 나눈다’는 데에서 기인했다.

사용목적:

- 이 교수법의 목적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강사에게 할 질문을 정리할 시간을 주거나, 읽은 텍스트와 관련된 혹은 자신들의 작업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관한 질문을 만들어 내는 데에 있다.
-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나누어 준 인쇄물을 읽은 뒤, 시청각 자료를 본 후 또는 강도가 높은 개별작업이 끝난 후 참가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두(세 명 단위의 조를 만들게 하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경험과 의문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유도해 보자.
- 옆의 참가자와 대화를 하게 함으로써 지식이나 깨달음의 공유화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어디인가가 정확해 지고, 다른 참가자들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용기를 얻어 진행자에게 주저함 없이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다.
- 그리고 이 “별집”을 유효 적절히 사용하게 되면 종종 교육의 장애요인으로 거론되는 옆 사람과의 잡담을 줄여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동안 금기처럼 되어오던 다른 참가자와의 의견교환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번개에 대한 설명>

번 개

언제 사용이 가능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대상이나 주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싶은 경우라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반드시 어떤 주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이 시작하는 시점, 중간 그리고 교육을 마칠 때에 참석자들의 느낌, 결심 혹은 컨디션을 알아보고 싶을 때
준비물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예상되는 소요시간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석자 한 명이 사용하는 시간이 30초에서 1분을 넘지 않음
이 게임의 특징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게임이라기 보다는 질문을 던지고 참석자 모두의 개인적 견해를 듣는 형식임
진행순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진행방식을 설명한다. ② 주제를 제시한다. ③ 참석자들의 의견을 돌아가며 듣는다. 이 때 토론이나 비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름의 유래: “번개”는 교육 진행자가 아무 때나 “번개”처럼 떠오르는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교육 참석자들 역시 30초~1분 내에 “번개”처럼 답을 말하여야 하여, 그 것도 한 문장 정도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신속성을 의미하는 “번개”라는 이름이 붙여진 교육진행기법이다.

사용의 예:

- “번개”를 교육의 맨 처음, 즉 참석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사용할 경우라면 “이번 교육에서는 특별히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곳까지 오는 여행은 어떻습니까?”라는 등의 질문을 던질 수 있겠다.
- “번개”를 오전교육 시작 직전 혹은 점심을 먹은 후 나른할 때에 사용한다면 아마 “지금 컨디션은 어떠세요?”라는 질문일 것이다.
- “번개”를 강의가 끝나고 혹은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사용할 경우에는 “오늘은

어떤 경험이 혹은 주제가 중요했나요?”라고 물을 수 있다.

- 전체주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지식 정도를 알기 위해 “번개”를 사용할 경우에는 큰 윤곽이 주어진 주제(혹은 어떤 문제, 상황 또는 설정)에 대한 견해를 모든 참석자들에게 간략히 표현하게 할 수도 있다.
- 교육을 모두 마친 시점에, 즉 가슴에 ‘실천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가득한 때에 그 기분을 “번개”처럼 대답하게 할 수도 있다.
- 물건을 사용한 “번개”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촌지봉투를 맨 처음 사람이 받아 자신이 느끼는 것을 “번개”처럼 짧게 이야기 한 뒤 다음 사람에게 그 봉투를 건네는 방식도 가능하다.

주의할 점:

- 진행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꼭 어떤 대답을 들어야겠다고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견이 없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순서를 아무 말 없이 옆으로 넘길 수도 있다.
- 다음으로 주의할 점은 이렇게 번개를 진행하는 도중에 토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참가자 각각의 의견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거나 비판을 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그저 단지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밝힐 뿐이다.

기타:

- 번개에는 연결작업이 필요치 않다. 번개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주제를 위한 어엿한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 그 다음의 진행을 위한 결정의 토대로 사용될 경우에는 번개를 통해 가시화된 각종 견해들에 대해 전체 토론을 하게 할 수 있다.
- 번개는 아주 신속한 방법으로 여론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룹내의 분위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사용될 수 있다.

<퀴즈에 대한 설명>

퀴즈게임

퀴즈게임은 요즘 많은 TV프로그램에서도 즐겨 사용되는 기법으로 영어의 question과 - 이점이 퍼즐과의 차이점인데 - show business를 함께 묶은 개념이다. 특히 어떤 지식을 재미있고 딱딱하지 않게 전달하려고 할 경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잘 아시다시피 퀴즈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질문을 선택하고 누가 정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승자가 결정되는 게임이다. 따라서 이 교육기법의 성공여부는 질문을 재미있게 만들고 질문의 난이도를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교육 참석자들의 관심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가에 달려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자칫 오락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지식의 전달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퀴즈게임에서 진 편의 참석자들이 패배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참석자들을 골고루 나누어 조편성을 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상실감은 조전체의 몫으로 만들어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행운이 없었다며 달래주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퀴즈는 교육의 모든 단계에 사용이 가능하다.

- 만약 교육의 주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사전에 테스트해보려 한다면 교육의 초기에 퀴즈를 사용할 수 있다. 구두로 퀴즈를 풀게 하거나 필기퀴즈도 가능하다. 또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할 경우 강의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 교육이 진행되는 중간에 산만한 분위기를 정리하거나 주제에 대한 관심을 유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도 퀴즈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품을 걸고 하는 것도 재미있다.
 - 교육의 마무리 단계에서 배운 바를 정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기퀴즈가 훨씬 더 바람직 할 수도 있다. 질문이 다 끝난 후에는 정답을 발표하고, 최후의 승자 한 명이 상을 받으며 나머지 참석자들의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다.
 - group work을 위한 퀴즈도 있다. 각 조가 테마의 파트를 나누어 조사를 한 후 다른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줄 자료를 정리한다. 그리고 정리한 바를 다른 참석자들에게 발표를 한다. 각 조의 발표가 끝나면 진행자는 각 조의 조사를 토대로 퀴즈를 만들어 게임을 진행할 수도 있다.
- 소위 '고급반 교육'의 경우 강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기초적인 내용을 교육 전에 미리 학습하게 하고 그 결과를 퀴즈로 검토할 수 있다

<두 마음 토론의 설명>

두 마음 토론

언제 사용이 가능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소통 훈련에• 갈등요인이 있는 사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을 드러내고 싶을 때
준비물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예상되는 소요시간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몇 단계를 밟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결정적인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3-4단계는 필요하다. 매 단계가 30분 이상이 소요되며 이 때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이 게임의 특징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비물이 필요없다.• 마음열기와 사귀기가 저절로 이루어진다.
진행순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① 3명을 한 조로 편성하기② 상황설명하기③ 두 마음 토론④ 결정하기와 이유설명⑤ 2, 3, 4번을 필요한 만큼 반복

“두 마음 토론”은 찬반토론에 역할게임을 접목한 방법입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소개한 방법 중에서 아마 가장 파급효과가 큰, 그래서 지금 도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신 방법이 아마 “두 마음 토론(이전의 명칭은 천사&악마 게임)”일거라 생각합니다.

이름의 유래: 무언가를 해야 할지, 혹은 하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마음속 두 마음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찬성과 반대가 자신만의 목소리로 마음의 주인을 설득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용목적:

- 의사소통 훈련, 즉 듣기와 말하기, 이견 조정하기 등의 능력을 훈련하고자 할 때,
- 특정한 갈등요인이나 사안에 대한 첨예한 견해차이를 드러내고자 할 때

진행순서:

- 우선 전체의 참석자를 3인 1조로 묶는다.



- 세 명 중 한 명이 중간에 앉고 나머지 두 명은 양편으로 선다. 그리고 오른쪽의 사람은 천사역을, 왼쪽의 사람은 악마역을 맡는다고 말한다.
- 진행자는 토론의 주제상황을 모두에게 설명한다.
예) 들어 만약 당신의 아버님이 위독하여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앞서 온 사람들이 이미 많습시다.
- 이제 천사와 악마에게 정확한 입장을 준다.
예) 천사: 가만히 순서를 기다리자!
악마: 수간호사와 친분이 있지. 그걸 이용해서 빨리 아버님을 치료해.
- 단, 천사와 악마는 중간의 사람이 자신을 쳐다볼 때에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서로 토론은 할 수 없다. 또 천사와 악마는 중간의 사람에게 질문을 할 수 없다. 게임의 재미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 번 중간의 사람을 움직여 자신을 쳐다보게 할 수 있다. 이 때 중간의 사람은 30초간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한다.
- 게임의 룰이 다 설명되면 진행자는 중간의 사람에게 ‘모든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오로지 들은 바에 따라 결정해줄 것을 당부한다.
- 게임이 시작하고 난 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게임을 멈춘다. 그리고 천사와 악마의 이야기를 들은 중간사람이 좌나 우편의 손을 들어 승자를 정해줌으로써 게임이 끝난다.
- 승패가 정해지고 나면 진행자는 중간사람역할을 했던 참석자들에게 결정의 이유를 묻는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토론으로 이어간다.

사용의 예:

이 방법은 단순하면서도 파괴력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용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저희가 사용한 예는 게임의 방식을 익히는 아주 쉬운 예,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알게 해주는 예 그리고 아직까지도 심심치 않게 논란이 되는 트랜스젠더의 예였습니다.

게임의 방식을 익히는 쉬운 예: 우편 사람은 아빠, 좌편 사람은 엄마 그리고 중앙의 사람은 아이의 역할을 맡습니다. 사랑하던 엄마와 아빠가 이혼할 지경에 이르렀죠. 두 분 모두 아이를 자신이 데려가 키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 결정을 아이에게 맡겼습니다. 이제 엄마와 아빠는 아이의 마음을 얻도록 설득하십시오.

성역할에 대한 예: 중앙에 앉으신 분이 미혼의 여성이라고 가정합니다. 하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남자가 오더니 자신의 마지막 소망을 이야기하고 결혼을 청합니다. 이 남자의 마지막 소망은 “결혼 후 가정에서 살림하는 남자가 되고 싶다!”입니다. 우편의 사람은 중앙의 여성을 설득해 결혼시키고, 좌편의 사람은 이 결혼을 무산되도록 하면 됩니다.

트랜스젠더의 예: 중앙에 앉으신 분은 미혼의 남성입니다. 우연히 사석에서 알게 된 미모의 여성과 오랜 교제를 하신 분이죠. 그리고 책임질 만큼의 육체적 관계도 맺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결심한 당신은 그 여성분께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당연히 허락할거라 확신하면서. 그런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그 여성은 결혼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끈질긴 추궁 끝에 얻은 여성의 대답은 중앙에 앉아계신 남성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대답은 “오빠, 나 사실은 ‘남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입니다. 자- 이제 좌우에 앉은 분들이 도와줄 차례입니다. 우편의 사람은 이 남성을 설득하여 결혼시키고, 좌편의 사람은 파토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좌우의 분들이 혼자 전략을 세우기가 벅찰 것 같아서 작전회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좌편의 분들은 모두 일어나 이 쪽으로 모여주시고, 우편의 분들은 모두 저 쪽으로 모여주세요. 작전회의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결정게임의 예>

비상착륙게임

언제 사용이 가능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을 고려한 의사결정능력을 게임을 통해 훈련시키고자 할 때 • 어떻게 하면 자신의 결정을 공동체에 관철시킬 수 있는지를 알게 하고 싶을 때 • 의사소통능력과 협상능력을 기르는 교육에
준비물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의 목적이 적힌 종이 • 게임의 순서 및 비상물품 목록이 적힌 종이 (혹은 이를 대신할 OHP film이나 파워포인트)
예상되는 소요시간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명의 성인교육인 경우에는 약 90분 정도
이 게임의 특징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강의 없이 이 게임만을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에는 게임이 끝나고 난 후 의사결정과 협상능력에 대한 강의를 할 수도 있다.
진행순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게임의 목적과 순서를 설명한다. ② 조를 편성한다. (5명이 한 조가 되면 좋겠다) ③ 각 조가 어떤 이유로 사막에 비상착륙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④ 비상물품목록을 소개하고 각 조의 임무, 주의사항 그리고 합의도출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⑤ 조별로 공동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⑥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전체가 모여 자기 조의 합의사항을 소개하고, 결정의 이유를 밝힌다. ⑦ 게임의 진행상황과 공동의 순서도출과정에 대한 평가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자가 ‘이상적인 순서’를 제시할 수도 있다.

비상착륙상황, 비상물품목록, 각 조의 임무, 주의사항, 합의도출을 위한 기본원칙 그리고 ‘이상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상황

여러분이 탄 전세비행기가 폭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대의 사막에 비상착륙 했다. 이 사막은 평화로운 국가의 영토에 속한다. 여러분, 즉 5명의 승무원과 승객들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행기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 할 정도로 부숴졌다. 상황을 검토해

상황

본 결과 여러분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부터 약 70km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새벽 6시. 해는 막 떴고 폭풍도 지나갔다. 아직은 매우 추운 날씨이다. 여러분의 생존은 걸어서 그 곳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 비상물품을 살펴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것들이 남아 있었다. 이제 여러분은 그 곳까지 무사히 도달하기 위해 가지고 가야 할 꼭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야 한다.

1. 구급약품 한 상자
2. 사냥총 한정과 50발의 탄약
3. 알코올버너 하나와 2리터의 연료
4. 20리터의 물이 들어있는 물통 하나
5. 접을 수 있는 삼 하나
6. 비행기 조종사의 손목시계 하나 (나침반이 부착되어있다)
7. 카메라 하나
8. 들것 하나
9. 2인용 텐트 두 개
10. 손전등 하나
11. 계량컵 하나
12. 집광렌즈 하나
13. 고무 구명보트 하나
14. 이동용 무선기 (최대거리 50km)
15. 천문지도 하나
16. 사각설탕 100개

임무

각 조의 임무는 생존자들이 들고 가기 위해 주어진 물건들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물건은 “1”을,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물건에는 “2”를, 그리고 가장 덜 중요한 물건에 “16”을 주면된다.

모든 조원들과 함께 최종결정을 도출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60분이다. 그리고 각 조는 다음의 주의사항과 기본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주의사항:

- 당신의 조는 모든 물건의 순서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만장일치로 정해야 한다.
- 만장일치가 그리 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순서가 모든 구성원을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물건의 순서가 어느 정도만큼은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한다.
- 가능한 진행방식의 예: 모든 조원들이 스스로 순서를 결정한다. (글로 적어서, 다른 사람과 말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모은다. 그리고는 위의 원칙에 따라서 순서를 논의하고 칠판에 적는다.

몇 가지 기본원칙들:

- 당신의 개인적인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피하라.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라.
- 만장일치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을 피하라.
-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당신의 의견과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일치할 때만 그 의견을 지지하라.
- 예를 들어 다수결의 원칙, 중간치셈 혹은 물물교환식 거래 (네가 나에게, 그러면 난 너에게 식) 등의 갈등해결기술들은 피하라.
- 빗나간 의견이라도 건설적인 것으로 고찰하라.

비교와 분석 이제 각 조의 결과를 전체의 결과와 비교할 때이다. 여기서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전체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참석자들 중 가장 정확한 사람과 가장 정확하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 주어진 기본원칙의 준수 정도 그리고 각 조별 작업을 비교검토 등이다. 각 조별작업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선 조별로 분석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 전체토론을 한다.

관찰자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분석해 보면 흥미로울 것이다:

1. 공식/비공식적인 리더가 있었는가? (누가 그 그룹을 지배했는가?)
2. 협동, 그룹간 연계 등은 어땠나? 아주 수동적 혹은 능동적 참여자가 있었나?
3. 의견의 차이가 어떻게 극복되었나?
4. 물건의 순서가 조전체의 순서보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한 사람은 없는가?

5. 첫 번째 분석 이후 해당 참석자의 반응은 어떠했으며, 해당 조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각 조의 작업을 비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상적인” 순서를 제시한다:

1. 조종사의 손목시계 (나침반이 없이는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릴 것이다.)
2. 무전기 (이 무전기의 사용거리는 50km - 따라서 이미 절반의 도움은 받은 셈이다.)
3. 20리터의 물이 담긴 물통
4. 2인용 텐트 2개 (사막에서는 탈수의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잠시라도 텐트 안의 그늘아래에서 머물 필요가 있다.)
5. 설탕 100개 (물과 함께 포도당의 섭취가 생존이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높여준다.)
6. 구급약품상자 (누군가 다쳤거나 아플 때 이 상자가 없으면 안 된다.)
7. 버너와 2리터의 연료 (오아시스를 만났을 경우 그 물은 끓여야만 마실 수 있다.)
8. 집광렌즈 (손쉽게 불을 피우기 위해)
9. 손전등 (사막의 밤은 유난히 어둡다)
10. 계량컵 (그리 필요하지는 않지만 별로 자리를 차지하지도 않고 물을 마시기가 쉽다.)
11. 들것 (극단적인 경우 힘든 상태를 무조건 견딜 필요가 없다.)
12. 천문지도 (나침반 역할을 하는 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불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 많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
13. 접을 수 있는 삼 (거의 쓸 필요가 없다, 혹시 텐트를 칠 때..)
14. 사냥총과 500발의 실탄 (평화로운 나라라서 범죄조직은 없을 것이다. 유목민이 있으면 몰라도, 사막에는 사냥할 짐승도 없다. 신호용으로 쓰려고 사냥총을 들고 다니기는 조금 무겁지 않을까?)
15. 구명보트 (뒤집어 놓은 보트 위에 앉아 있는 것이 맨 땅바닥 보다 편하긴 하겠다.)
16. 카메라 (정말로 필요 없는 물건이다. 나중에 위해서 기념사진이나 증거를 남기려다 사람 목숨을 잃을 것이다.)

다양한 좌석배치

학습자의 참여를 지향한 다양한 교육방법을 접하기 전에는 ‘학습공간’이 학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감하지 못했었다. 아니 비단 학습공간뿐만 아니라 학습 혹은 교육과 관련된 요소 중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 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교육 혹은 학습의 성과를 높이는데 필요한 요소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준비 정도 외에도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었다.

교육장의 좌석배치, 교육장 내의 환기와 조명, 음향시설과 소리의 울림, 교육장 밖의 소음과 창 밖으로 보이는 주변경치 등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 후에 나는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사소한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길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지금부터 소개할 다양한 좌석배치의 예를 면밀히 살펴보면 교사와 학생의 위치, 그리고 책상배치가 교육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참고로 좌석배치의 이름은 저자가 임의로 정한 것이므로, 이름보다는 내용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당부 드린다.

1. ‘서당’형 좌석배치
2. ‘말굽’형 좌석배치
3. 사각형 좌석배치
4. ‘코스모스’형 좌석배치
5. ‘깊신벌레’형 좌석배치
6. ‘키위’형 좌석배치
7. ‘대장간’형 좌석배치
8. V형 좌석배치
9. ‘진주 목걸이’형 좌석배치
10. ‘오 예스’형 좌석배치
11. 반원형 좌석배치

- 12. '이중 형광등'형 좌석배치
- 13. '브리핑'형 좌석배치
- 14. '전문가 초청강의'형 좌석배치
- 15. 책상이 없는 V형 좌석배치
- 16. 패널토의를 위한 원형 경기장
- 17. 조별 활동을 위한 강의실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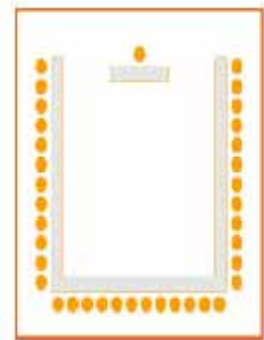
1. '서당'형 좌석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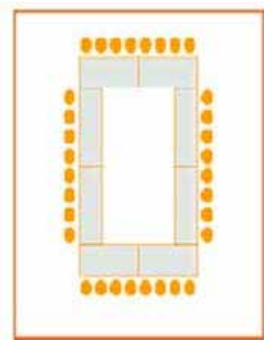
가장 일반적인 좌석배치의 형태로서 참가자들은 전면의 강사나 교육자를 보고 앉게 되며 강사/교육자의 강의나 프레젠테이션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 진행자 1인에 대해 집중도가 높아 강의와 같이 정보의 전달을 위한 교육에 가장 많이 선택되고 있다. 좌석배치를 위해 별도로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반면 집단활동이나 참가자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워 참가자의 교육참여가 제한된다.

2. '말굽'형 좌석배치

교육참가자들은 말굽형 (U자형) 좌석배열의 바깥쪽에 앉고 강사/진행자는 앞쪽 책상에 앉는다. 이 경우 피교육자들은 대부분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앉게 되어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조금은 편리하게 된다. 다만 처음 만난 참가자들인 경우 서먹서먹함 때문에 쉽게 말문을 열기가 어렵고, 경우에 따라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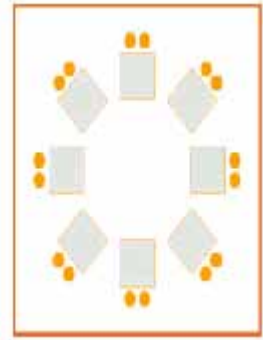
3. 사각형 좌석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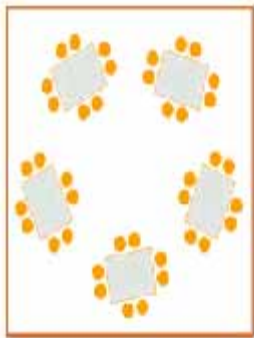
책상을 사각형으로 붙인 형태. 상호 위치나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동등한 참여자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진행자도 참가자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진행자가 참가자의 일부이면서도 교육진행을 촉진하려면 충분한 준비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참가자간에 이해의 폭이 다르고 경험과 관심이 달라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통제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4. ‘코스모스’형 좌석배치

강의와 전체토론이 동시에 가능한 좌석배치이다. 이 좌석배치의 장점은 각각의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소그룹의 활동이 필요에 따라서는 전체토론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지 참석자의 숫자가 많고 강의장소가 좁을 경우에는 이렇게 좌석을 배치하기가 쉽지 않다.



5. ‘짚신벌레’형 좌석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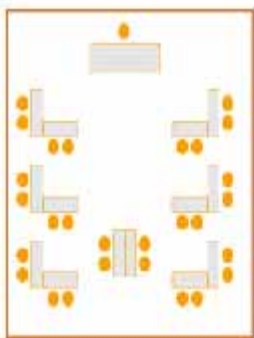
조모임을 강의실전체로 분산시켜놓은 형태이다. 독립적인 활동이 보장되며 각 조간의 경쟁심을 부추기기에 효과적인 좌석배치이다. 단점으로는 자칫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서 통솔이 어려울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각 조별 토론을 전체토론으로 확산시켜야 할 경우 다소간에 균형이 깨어질 수 있다.

6. ‘키위’형 좌석배치

“짚신벌레들의 계모임”형을 전체토론이 가능하도록 모아놓은 형태이다. 조별활동이 전체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넓은 강의실이 필요한 배치이다. 이 때 앞쪽에 놓인 하나의 테이블에 대표자들을 앉히고 패널토의를 할 수도 있고, 주제와 관련된 외부의 전문가들을 초대하면 전문가 초청 강연회도 가능한 배치이다.



7. ‘대장간’형 좌석배치



강의와 소그룹 토의 그리고 전체토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배치이다. 이 방법은 진행자가 강의나 의제를 제안하고 즉석에서 그룹토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종합할 수 있어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또 교실식으로 놓여있는 좌선의 위치를 약간만 바꾸어 놓으면 되기 때문에 시간소모도 많지 않다.

8. V형 좌석배치

전문가들이나 Task Force가 모여 한가지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을 할 경우, 발제자나 강사가 2명 이상일 경우에 그리고 참석자의 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 가능한 형태이다. 책상이 있기 때문에 필기가 가능하고 많은 참고서적을 쌓아놓고 토론이 가능하다. 다양한 형태의 좌석배치 중에서 강사/발표자에 대한 집중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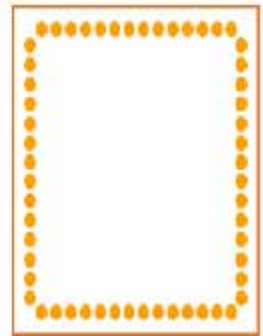
9. ‘진주 목걸이’형 좌석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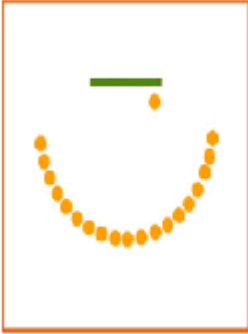
참가자들은 책상에 앉았을 때 보다 훨씬 개방적이 되고 자신을 열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강요를 받는 배치이다. 집단형성이나 참석자간의 의사소통이나 경험의 교환 혹은 공동의 결정을 해야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적합하다. 의사소통이 원활한 반면 경험이 없는 참가자들은 적응이 쉽지 않고 자신이 모두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어색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10. ‘오 예스’형 좌석배치

강의실에 책상이 없다는 조건은 학교교실에 익숙한 참석자들을 무척이나 당황하게 한다. 따라서 책상이 없는 좌석배치를 시도하고 싶을 때에는 “오 예스” 좌석배치를 권하고 싶다. 책상이 없는 대신 등 뒤로 벽이 있어서 어느 정도 허전함을 극복할 수 있다. 강사도 역시 참가자들과 동등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 거리감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모서리에 앉아 있는 참석자와는 의사소통이 그리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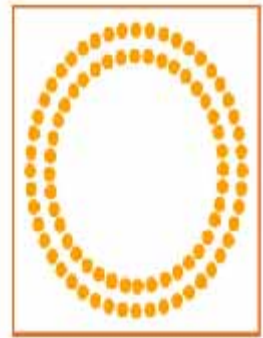
11. 반원형 좌석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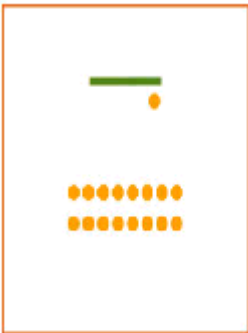
최근에 들어 개방형 강의를 위해 자주 선택되는 좌석배치이다. 참가자들은 게시판이나 칠판 등의 중심점을 향해 반원형으로 앉는데 주의가 한곳으로 집중되어 회의나 강의의 진행이 긴밀해 질 수 있으며 상호 의사소통도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 단점이라면 많은 인원을 위해서는 그리 적당하지 않다는 점이다.

12. ‘이중 형광등’형 좌석배치

“진주목걸이”형 좌석배치와 같으나 참가자가 많을 때 선택한다. 이중의 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깥원에 앉은 사람이 전체의 토론에 참여하기란 그리 용이하지 못하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두개의 원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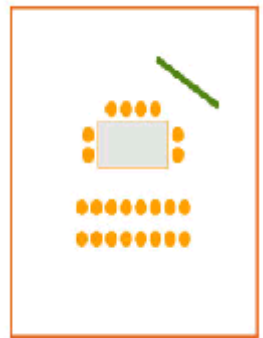
13. 브리핑형 좌석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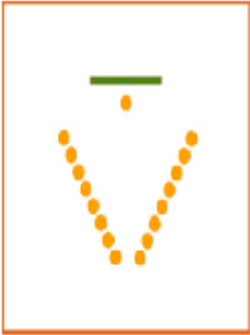
브리핑을 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 설명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비록 책상은 없지만) 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을 보고 1열 혹은 2,3열로 나란히 앉아있는 형태이다. 이 좌석배치의 목적은 정보의 전달이다. 단지 참석자가 필기를 할 책상이 없는 관계로 전달하려는 내용을 미리 인쇄물로 만들어 전달하거나 OHP 혹은 빔프로젝터 등을 사용한 형상화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14. ‘전문가 초청강의’형 좌석배치

브리핑”형 좌석배치와 비슷하지만 전면에 전문가들이 초청되어 있거나 패널 혹은 토론자들이 나와서 토론을 진행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옆에 칠판이나 플립차트를 두면 적극적인 프레젠테이션도 가능하다. 그러나 참가자와의 혹은 참가자간의 의사소통이나 전체적 토론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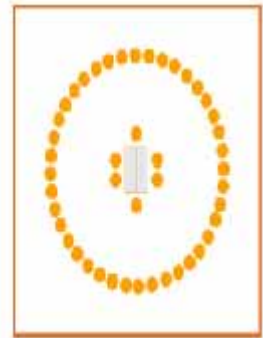
15. 책상이 없는 V형 좌석배치



강의나 정보의 전달을 위한 형태이다. 앞에 나와 서있는 강사나 발표자에게로의 집중도가 높으면서도 강사와 참가자 간의 의견교환이 가능한 형태이다. 이 좌석배치는 참가자 상호간의 의사소통도 용이하고 진행자는 참가자에 속하게 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단지 참가자의 수가 적을 때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참가자들이 서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때 보다 효과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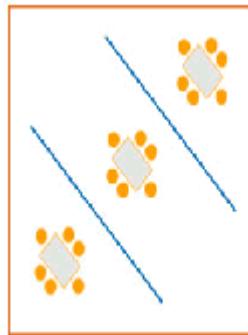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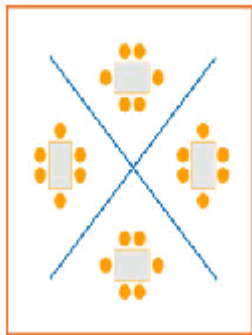
16. 패널토의를 위한 원형 경기장

전적으로 패널토의를 위한 좌석배치이다. 중앙에 토론자들이 마주 앉고 그 주위로 참석자들이 배석하게 되어서 관찰과 방청이 가능한 형태이다. 플로어에서 토론자들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다



17. 조별 활동을 위한 강의실 나누기

분임토의나 소모임 활동을 위한 소회의실이 갖추어져 있지 못할 경우 진행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의실을 나눌 방법을 알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칠판이나 칸막이를 사용하여 다양한 나누기를 할 수 있다.



<질문법과 수사법에 대한 설명>

대화법과 질문법

1. 간접화법
- 아니,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면 어떡합니까? - 저쪽에 흡연실이 있습니다.
2. 긍정화법
- 이번에는 학생장이 발표하지 마세요. - 이번에는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은 분 중에 한 분이 발표하겠습니다.
3. 플러스화법
- 이번 시간은 휴식시간이 없습니다. 대신 저녁시간을 조금 앞당겨 일찍 끝내겠습니다. (상대의 이점을 설명해주는 방식)
4. If 화법
- 손님은 신용이 낮아서 대출해 드릴 수 없습니다. - 손님께서 신용등급을 조금만 높으시면 바로 대출 가능합니다. - 이 과장은 왜 맨 날 지각이야! - 이 과장은 지각만 하지 않으면 정말 우수한 사원이야. 그렇지?
5. Yes 화법
- 자장면은 무슨 자장면이야, 이런 날씨에! (“점심시간에 우리 뭘 먹지? 자장면 먹자, 자장면”이라는 대화가 오고 갈 때) - 자장면 좋지. 나도 좋아해. 그렇지만 오늘은 분위기도 그런데... 칼국수는 어때?
6. I-Massage 화법
내 감정이 부정적인 상태일 때 (혹은 내 감정은 부정적, 상대방의 감정은 긍정적일 경우) - 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텔레비전 꺼! 숙제 다 했어? - 아빠가 신문 읽고 있는데, 너희들이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왔다갔다하면 (사실과 행동) 아빠 신문 읽는데 지장이 있겠지? (영향) 그러니까 텔레비전 소리 좀 줄여줄래! (감정)
7. 칭찬화법
구체적으로, 특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말하며, 기억에 남도록 하고,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말고, 상대의 마음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갖고 말하는 화법: 대담한 찬사법, 단순 찬사법, 호칭변경 찬사법, 감탄 찬사법, 비유 찬사법, 소유물 찬사법 - (40대 여성에게) “아주 젊어 보이시네요.” 보다는 “20대 초반 같아요” 혹은 “여고생 같아요” - “예뻐 보이시네요” 혹은 “건강해 보이시네요” - 이 과장이 학위를 땀을 경우: 이 박사님! - 와! 야! 어쩐지! 등 - 장보고 같은 카리스마가 넘치네! - 넥타이가 와이셔츠랑 잘 어울리시네요.

열린 질문의 12가지 형태	
기술적(記述的)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분께 나눠드린 사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 경찰관 A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경찰과 피의자 사이에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나요? • 이때 인권을 지켜줄 방법에는 얼마나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까?
비교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두 사건의 서로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유사점은 무엇인가요? • 만약 인권수호자라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역사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런 수사의 관행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죠? • 그 사이 어떤 변혁이 일어나지는 않았나요? • 과거의 사건 중에 올바른 대처였다고 판명될 만한 것은 없었나요?
개념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런 행동을 인권침해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인권침해로 분류된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 만약 이런 행동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했을 경우, 이 행동에 적절한 명칭을 붙인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인과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런 결과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이런 결과가 일어나도록 작용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관계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건과 저 사건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습니까? • 당신은 이 사건이 저 사건과 다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언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떠한 결과로 끝날까요? •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설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일에 그러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 만일 이것이 인권침해라면, 다른 것은 인권수호일까요?
방법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를 찾아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이와 관련된 법적인 근거나 판례를 어떤 경로로 수집할 수 있습니까? • 관찰된 것, 즉 눈에 보이는 것은 신뢰할 수 있나요? • 수집된 자료는 타당한가요?
가치지향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상황에서 인권침해를 하지 않으려면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항상 나쁜가요?
관련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것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지요? • 유사한 상황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정의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용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이들 예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 우리가 제시한 정의에 다른 경찰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용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나요?

<터부토론의 설명>

터부토론

언제 사용이 가능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성과 반대간에 참여한 의견대립이 있는 사안을 놓고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살피고, 찬성과 반대의견의 논지를 이성적으로 살펴보고자 할 때 • 의사소통훈련을 위해
준비물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의 방법이 적힌 종이 • 게임의 시간배분이 명시된 종이 • 종, 스티커
예상되는 소요시간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짧게는 3시간에서 길게는 2-3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
이 게임의 특징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렵고 난해한 주제에 대해서도 참석자 스스로 깊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주제지식과 더불어 의사소통훈련을 병행할 수 있다. •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학습할 수 있다.
진행순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리배치 및 게임에 대한 설명 ② 주제선택 ③ 역할 나누기 ④ 규칙설정(배심원) + 전략개발(찬성측과 반대측) ⑤ 기조발언(찬성측과 반대측) ⑥ 질의응답(찬성측과 반대측) ⑦ 최후변론(찬성측과 반대측) ⑧ 배심원 판결 ⑨ 전체토론

‘터부토론’은 역할게임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단지 역할게임과 비교해서 찬성과 반대의견이 보다 명확해 지고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체득할 가능성이 월등하다.

터부토론을 위한 좌석배치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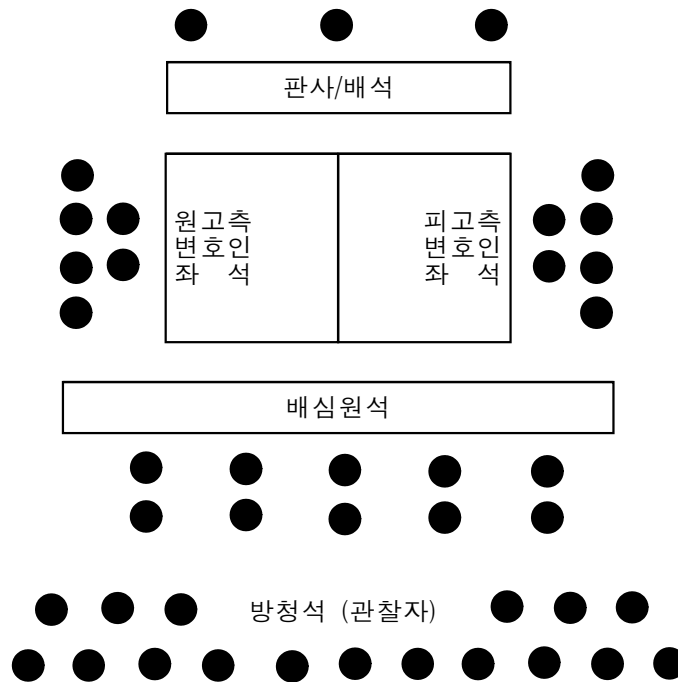
이름의 유래: 찬성과 반대측은 자신들이 선택한 특정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금기단어 즉 터부단어가 있기에 터부토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사용목적:

찬성과 반대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는 사안을 놓고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살피고, 찬성과 반대의견의 논지를 이성적으로 살펴보고자 할 때 의사소통훈련을 위해

진행순서:

진행자는 아래의 그림처럼 좌석을 배치하고 게임의 룰을 설명한다.



- 좌석배치가 끝나면 재판관과 배석, 원고와 피고측 변호인(단), 배심원, 관찰자 등의 역할을 배정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을 설정할 수도 있다. 중앙에서 게임을 진행하는 판사역할은 일반적으로 이 게임을 잘 알고 있는 진행자가 맡는다. 판사 양편에 자리한 배석은 토론이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지의 여부와 금기단어를 사용하는지를 체크하는 역할을 한다. (인원수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배석의 역할을 배심원이 할 수도 있다.)
- 참석자들에게 상황설명서를 통해 주어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다.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 필요하다면 상황이 자세히 소개된 신문기사나 책을 나누어

주고 학습하게 한다.

예) 원고측은 러브호텔을 철거하라는 시민단체이고 피고측은 러브호텔의 소유주가 된다.

- 터부토론의 규칙과 터부단어를 전체가 함께 결정한다. (3시간 교육인 경우 터부 단어는 일반적으로 5개가 좋다.) 토론의 규칙은 모두가 함께 결정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배심원들이 정할 수도 있다.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는 찬성측이 2개, 반대측이 2개 그리고 배심원이 결정적인 단어 1개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도 좋다.)

예) 원고와 피고측은 2분짜리 질문이나 변론을 5회에 걸쳐 교환한다. 단 발언은 맨 앞에 앉은 두 명만이 할 수 있으며 선수교체는 2번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4분 동안 배심원에게 최후변론을 한다. 터부단어를 사용할 경우는 -2점이 된다.

- 터부토론을 진행한다. 진행자는 가능하면 재미있게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한다.
- 정해진 규칙에 따라 토론시간이 다 경과한 후에는 배심원들이 토론의 승자를 가린다. 이때 찬(반 토론자들은 바깥으로 나가 휴식을 취하고, 배심원들이 자리에 남아 평결의 논리적 이유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모두가 함께 한 자리에서 평결내용과 그 이유를 밝힌다.
- 토론이 끝나면 참석자들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스스로 평가를 내린다. 만약 교육의 인원이 많아서 방청석에도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들의 의견을 듣는다.
- 관찰자의 평가를 주고 받으며 전체토론으로 들어간다. 이후에 주제와 관련된 강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용의 예:

수 년 전, '민주시민교육 방법론 워크숍'에서 참석자 한 분이 대표로 나와 <터부토론>의 진행을 시연해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 분이 진행을 하시다가 참 유용한 실수를 해주셔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소란을 잠재우는 기법입니다.

저희가 소개해 드린 교육방법을 사용하시다 보면 ‘소란’과 ‘무질서’처럼 보이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 때 그 분이 사용하신 방법은 “자- 다같이 박수 세 번!”이었습니다. 한 편에서는 민주적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또 다른 한 편에서는 독재적 방법을 병행하시는 격이죠.

그럼 토론이 격해지고 의견개진이 왕성해서 심지어는 혼란하게까지 보이는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런 상황이 오기 5분전부터 미리 끝내기를 준비합니다. 5분전이 되면 “종료 5분 남았습니다!”라고 남은 시간을 공지하죠. 3분전과 1분전에도 역시 알려드리면서 끝낼 준비를 하시라고 부탁 드리죠. 30초 전에도 알려드리고, 10초 전부터는 역으로 카운트를 하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한 시간 내에 끝내주시더군요.

그래도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시간을 더 주셔야죠. 왜냐하면 내용과 결과는 참석자들의 몫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토론을 더 길게 해야만 한다고 하잖아요.

<Vision Tour의 설명>

Vision Tour (미래체험학습)

언제 사용이 가능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들이 함께 미래의 사항을 결정하고자 할 때 • 예를 들어, 부정적 현실에 대한 대안을 창출하여 해당관청이나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제도개선을 요구하고자 할 때 • 공동체에서 이견조정능력을 훈련시키고자 할 때 • 의사소통능력을 높이는 교육에
준비물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의 목적 및 순서가 적힌 종이 (소포지와 같은 큰 종이) • 모더레이션 카드와 필기구 • 전지와 소포지 • 크레파스, 색종이, 색끈, 풀, 칼, 가위, 접착테이프 • 그 외 참석자들이 콩트나 콜라주를 조별작업 발표수단으로 삼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소품들이 마련되면 좋겠다. • 미래체험학습에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도 필요하다. 따라서 음악을 틀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상되는 소요시간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명의 성인교육인 경우에는 적어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됨 •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참석자가 50명 이상일 경우에는 6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이 게임의 특징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학습자가 미래에 대한 결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법으로 민주화에 기여한다. •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바라보며, 이를 저해하는 일체의 장애요소를 인정하지 않는 기법이다. • 교육기법자체가 총체적이다. • 학습자들의 창조성을 촉진시키는 기법이다. • 모든 학습자들에게 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진행순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준비단계 ② 비판단계 ③ 상상단계 ④ 현실화단계 ⑤ 후속작업

주어진 시간이 4시간밖에 없다면 <A형: 준비단계-비판단계-상상단계> 혹은 <B형: 비판단계-상상단계-현실화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교육에 참석한 사람들이 서로 친분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A형을, 그렇지 않고 이미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B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석자들이 서로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교육의 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전문 지식이 갖추어져 있는 1박 2일 교육이 계획되어 있다면 미래체험학습 5단계 모두를 권하고 싶다. 교육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탄탄하게 연결된, 재미와 내용 모두를 동시에 얻는 훌륭한 경험을 할 것이다.

1. 준비단계

준비단계는 다음과 같은 몇 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과정들을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제설정: 모든 학습자들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정해진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하나의 주제를 선택한다.
- 교육장소선택: 장소의 선택이 교육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 학습자들이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갖추어진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가장 이상적인 장소는 전체토론을 할 수 있는 대강의장, 각 조가 방해받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소그룹 회의실 그리고 간단한 음료수를 즐길 공간 등이 한 건물 내에 마련된 곳이다. (이런 곳에는 당연히 여러 개의 칠판, 화이트보드, 이동용 보드 혹은 핀보드 등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다.)
- 모더레이터 배치: 학습자의 수가 30명을 넘을 경우에는 두 명의 모더레이터가 배치되는 것이 좋다.
- 교육재료준비: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크기의 종이 (소형 종이카드, 종이 띠, A4 용지, 2절지, 소포지 등)와 굵은 필기구, 종이를 부착시킬 수 있는 핀이나 스퀘어 스텐더프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또 word작업과 복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체가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경우에는 색종이, 오래된 잡지, 가위, 칼, 색 띠, OHP와 필름 등 작업한 미래상을 형상화할 수 있는 보조수단도

준비되어야 한다.

- 사권의 시간: 만약 학습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라면 사권의 시간을 배치해 두자. 이미 서로간에 아는 사이라 할지라도 신뢰의 벽을 보다 두텁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미래학습장 소개: 교육의 목적과 진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가능하면 자세히 설명하고, 게임의 법칙과 진행순서를 종이에 적어 부착한 뒤 소개한다. (이 종이는 전 과정이 끝날 때까지 대강의장에 두어서 수시로 교육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2. 비판단계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현실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단계로서 ‘비판 모으기’와 모인 비판들을 ‘유형별로 나누고 평가하기’로 구성되어있다.

- 비판 모으기:

- 모두 큰 원을 이루고 둘러앉는다. 모더레이터는 참가자에게 굵은 펜을 지급한다.
- 원의 중앙에 놓인 한가지 색상의 종이 띠 (대략 8 x 20 cm정도) 묶음에서 한 사람 당 두(세 장의 종이 띠를 취한다. (종이의 색상을 통일하는 이유는 모든 의견이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 모더레이터는 칠판에 교육의 주제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그러나 아주 자극적으로 기록한다. (예: “당신이 부패의 주범이지?” 혹은 “봐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른 척!” 등)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비판을 생각할 시간을 준다. 옆 사람과 의견교환은 금한다.
- 참석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생각나는 것을 종이 띠에 기록한다. 기록이 다 끝나면 한 명씩 큰소리로 읽고 다른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원의 중앙에 놓는다.
- 남의 의견에 대한 비판이나 토론은 절대 금한다!

- 비판을 유형별로 나누고 평가하기:

- 모더레이터는 원의 중앙에 놓인 종이 띠들을 내용에 따라 같은 유형별로 정리한다. 이 때 만약 종이에 기록한 내용이 여러 각도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글을 작성한 사람의 의견을 정확히 물어가며 종이 띠를 그 유형에 따라 나누

어 놓는다. 그리고 나누어진 각각의 유형을 한 장의 종이에 부착하거나 아니면 각 종이 띠를 스카치테이프로 연결한다. (주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논의의 대상이 될 만한 주제였다면 일반적으로 5-6개의 정도의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 좋다.)

- 모더레이터는 참석자 개개인에게 조그만 스티커를 지급한다. 스티커의 개수는 (유형의 개수+1)을 2로 나눈 것이다. 참석자들은 자신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하는 혹은 재미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유형에 스티커를 붙여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 때 모더레이터가 유념해야 할 사항은 참석자들이 한 가지 유형에 2개 이상의 스티커를 몰아서 붙일 수 없도록 주의를 주는 일이다.
- 이런 과정을 거쳐 스티커를 많이 얻은 유형 3-4개를 선택하고, 그 수만큼 참가자들을 조별로 나눈다.

3. 상상단계

상상단계는 이전의 비판단계에서 표출된 문제점들을 각 조가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단계이다. 모든 강요, 제한, 의심, 현실적 제약 등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지상 최고의 유토피아를 만들어 내도록 한다. 상상에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치적 한계는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 “이건 불가능해!”라는 말은 금지다.

- 각 조는 소그룹 회의실을 배정 받는다.
- 각 조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혹은 자신들이 선택한 유형의 카드를 살핀 뒤 그 카드에 적힌 비판들을 긍정적으로 바꿀 방안을 생각한다. 그리고 그와 정 반대되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면 된다. 이 때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기법의 사용을 권하고 싶다. 이 기법을 사용하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원 전체의 제안을 짧은 시간 내에 모아낼 수 있다.
-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해 얻어진 수 많은 대안들과 아이디어들을 앞의 단계에서 했던 것처럼 유형화하고, 그 중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대안의 미래를 만들어내야 할 유형을 선택한다.

- 상상단계에 필요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 비판엄금! 브레인스토밍 단계나 아이디어-라이팅(Idea-Writing) 단계에서 다른 멤버의 발표내용에 대해 비판을 가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 모든 것이 가능하다. 어떠한 제한도 없다. 자신이 상상한 유토피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재화와 권력, 정치적 수단 그리고 어떠한 기술의 사용도 허용된다.
 - 유토피아는 다른 참여자에게 장면장면의 묘사가 가능할 만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예: '미래의 여행수기'나 '미래의 뉴스' 등과 유사한 형태의 언어적 설명, 판토마임이나 짧은 연극, 그림, 콜라주, 시(詩), 노래 혹은 섬세한 장면묘사가 곁들여진 라디오 드라마 등)
-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각 조는 다시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결과물을 소개한다.

4. 현실화단계

앞서 비판단계에서 얻게 된 현실에 대한 실망과 심리적 좌절 그리고 이와는 달리 상상단계를 통해 고조된 자유로운 감정을 이 단계에서 하나로 묶어내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현실화단계가 가장 어려운 작업일지도 모른다.

이 단계는 학생들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해 형상화시켜 보인 멋진 미래, 유토피아, 환상적 낙원을 현실세계로 가져와서 혹시 그 것의 작은 일부분이라도 현실에 적용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미래를 만들려면 현실에서는 어떤 것을 변화시켜야 할지를 모두가 함께 검토해 보는 시간이다.

- 비평단계: 우선 소개된 미래의 모습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 목표한 바를 실현시키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소형 프로젝트를 구상한다. 이때 프로젝트는 자신이 앞 뒤 연관성을 잘 알고 있으며, 동시에 자신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구체적 지역에 거점을 두게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그 동네에서, 학교 내에서, 친척들과 혹은 지역언론의 도움을 받아 등등)

- 전략 (혹은 실행계획) 세우기: 예를 들어 단계별 계획 (단기, 중-, 장기 계획)을 세우고, 예산지원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하며, (교육이나 실행) 프로젝트 후원자와 타겟그룹을 선택한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이미 성공한 예가 있는지 아니면 이미 이를 실행하고 있는 단체나 조직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5. 후속작업

미래체험학습의 지속적 유지를 논의하는 단계이다.

- Follow-up 프로그램: 미래체험학습은 일회성 교육기법이 아니다. 한 번 교육에 참가한 사람들을 위한 후속프로그램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숙박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는 않다. 참석자들이 제안한 미래의 목표와 프로젝트가 얼마나 현실화되었는지를 비교하고 검토할 수 있는 만남 정도라도 충분하다.
- 개인적 정보의 교환: 중요한 것은 참석자들 사이의 연계망을 구축하는 작업이다. 서로 연락처(e-mail주소, 전화번호 등)를 교환하여 생산적인 만남이 계속되도록 한다.
- 전체평가: 앞서 몇 일 혹은 몇 시간에 걸쳐 진행된 미래체험학습을 체험한 개개인의 감상과 결의 혹은 프로그램의 전체적 진행, 음식과 숙박에 대한 평가를 ‘번개’ 등의 기법을 통해 구두로 혹은 ‘나에게 쓰는 편지’ 등의 기법을 통해 문장으로 서술하게 한다.

<모자들의 수다 설명>

모자들의 수다

<사용목적>

- 동일한 사회적 문제점에 대해 구성원 각자는 서로 다른 입장과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시키고자 할 때
- 관용과 협상의 능력을 키워주고자 할 때
-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훈련하고자 할 때

<진행순서>

1. 진행자는 교육참석자 중 5명을 선발하여 교육장의 중앙에 앉힌다. 나머지 참석자들은 이들 주위로 둘러앉아 대화의 진행과정과 변화를 관찰한다.
2. 진행자는 중앙의 5명에게 다섯 색상(흰색, 검정, 파랑, 빨강, 노랑)의 모자를 나눠준다. 그리고 난 뒤, 이 다섯 가지 모자의 색은 동일사안에 대한 다섯 가지 입장을 표시한다는 사실과, 그렇기 때문에 모자를 쓴 5명은 모자의 색이 규정하는 입장에 맞추어 대화에 참석해야 하며, 문제분석이나 견해표명도 철저히 모자의 색에 따라야 함을 설명한다.
3. 진행자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색상이 표시하는 입장을 종이에 적어 모두에게 소개한다.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이런 성격을 적은 종이를 복사하여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 흰색: '냉철한' 사람이다. 철저히 사안과 정보를 고수하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하는 외형을 내세운다. 예를 들어, 그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통계에 따르면..', '분석해 본 결과..', '수치상으로 보자면..' 등이다. 그는 정확한 것을 좋아한다. 자세나 행동도 모범생이나 학구파를 떠올리게 한다.
 - 검정: 만사에 '회의적인' 사람이다. 일단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본다. 장애요인과 불가능함을 계속 주장하며 부정적 판단을 내린다. 불신과 불만에 가득 차 있으며, 앉은 자세도 바르지 못하고, 바라보는 시선조차 웬지 모르르게 불만이 풍겨 나온다.
 - 빨강: '감정이 풍부하고 정적인' 사람이다. 추측과 직관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이 경우 추측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는 중요치 않다.) 마냥 시끄럽다. 한마디로 ‘오버 맨’ 그 자체다. 제스춰도 크고 목소리도 찌렁찌렁하다. 가장 잘 웃고 떠든다.

- 노랑: ‘경건하고 종교적 신앙심이 강한’ 사람이다. (그의 종교가 무엇이냐는 그리 중요치 않다. 임의로 설정 바란다.)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있고 항상 낙관적이다. 통계자료도 두렵한 대안도 없지만 신이나 절대자의 인도하심이 그를 인도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남에게 자신의 믿음을 권유한다.
- 파랑: ‘논리적이고 중립적인’ 사람이다. 조절능력이 있어서 다른 모자들의 대화를 잘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회자 역할을 한다. 그가 자주 사용하는 말인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씀은 ... 이라 정리할 수 있겠군요.’에서 보듯 그는 종합능력과 분석능력을 가지고 있다.

4. 주제를 주고 이 주제에 대해 수다를 떨라(?)고 부탁한다. 5명이 각자의 모자에 맞추어 대화를 시작한지 10분-15분 정도가 경과하면 진행자는 모자를 바꾸어 쓰라고 명한다. 물론 모자를 바꾸어 쓰면 입장도 바뀐다. 모자의 교환은 진행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반복할 수 있다.
5. 5명의 주위에 둘러앉아 관찰하는 사람들의 역할: 모자가 바뀌면서 함께 변하는 토론자들의 모습을 관찰한다. 표정과 목소리는 어떻게 달라지나? 손짓과 제스처가 커지고 작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입장에 따라 내용은 어떻게 변하나? 과연 모자가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큰가? 등이다.
6. 충분히 토론이 되고 나면 진행자는 중앙에 앉았던 5명에게 소감을 묻는다. 이들의 발표가 끝나면 관찰자가 결과를 이야기한다.
7. 모두의 발표가 끝나면 전체토론으로 이어간다. 전체토론의 주제는 그날의 모자 게임주제나 사회적 문제점이다. 주의할 점: 이 때는 앞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비판하거나 언급하지 않는다.

<진행자를 위해>

- 여러 가지로 변형이 가능하다.
- ① 첫 번째 변형의 가능성: 중앙의 5명을 10명으로 하고, 두 명을 한 조로 편성한 뒤 번갈아 발언권을 갖거나, 아니면 대표발언자가 답을 할 수 없을 때 도와주는 식으로 해도 된다.
- ② 두 번째 변형의 가능성: 전체 참가자를 5개의 조로 나누고 조별로 토론을 준비

할 시간을 준 뒤 대표자가 앞으로 나와 토론을 할 수도 있다. 나머지 진행은 앞과 동일하다.

- ③ 세 번째 변형의 가능성: 모자의 선택권을 참석자들에 주는 경우다. 우선 모자의 의미를 설명한 뒤 참석자들 중에서 자신 있는 5명이 자의지로 모자를 선택하고 토론에 나서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토론의 시작이 열기를 띠는 장점이 있다.
- ④ ‘수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참석자들에 어울리지 않으면 TV토론회와 같은 형식을 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내부진행자인 파란모자가 MC역할을 맡고, 나머지 네 모자는 토론 참가자역할을 맡는 것이다.

- 모자의 교환횟수나 시기 및 방식은 진행자가 대화를 지켜보고 결정한다. 때에 따라서는 바깥에 앉은 관찰자들도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규칙을 정해도 된다.
- 모자의 색상이 의미하는 바를 큰 종이에 기록한 뒤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두면 토론이 훨씬 원활해짐은 이미 설명 드린 바이다. 이처럼 진행자의 조그만 주의와 준비 및 배려는 게임의 진행과 토론을 촉진시키는 효과적인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프로그램 개요 II

인권감수성 키우기 프로그램

진행 : 김 희 은

□ 프로그램 개요

1) 사람과 함께하는 나의 일, 경찰

□ 교육 목적

- 경찰의 업무는 사람과 관련된 일임을 인지하게 한다. 사람과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우선 자신의 경험 속에서 사람다운 대접과 존중, 배려를 받는다는 것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한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여유와 관대함을 가지게 한다.

□ 교육 구성

단계	주요 프로그램	목 표	소요 시간	준 비 물
도입	완두콩 대왕	처음 만나 어색하고 서먹한 분위기를 허물고 친숙한 분위기를 만든다.	10분	학습자 1인당 완두콩 혹은 사탕 다섯 알
전개	사랑하는 나의 일, 경찰	학습자의 경찰직에 대한 자기 만족도를 점검함으로써 경찰조직의 인권존중 혹은 침해상황을 토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10분	
	경찰조직의 인권존중/ 침해 점검하기	학습자의 현장에서부터의 인권침해 경험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인권침해는 바로 자신의 문제임을 알게 한다.	40분	종이, 마커, 테잎, 교수자료1, 교수자료2
	짜려보는 경찰	경찰의 업무특성상 특히 인권침해상황을 빈번하게 일으킬 여지가 있는 시민과 시민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서가 아니라 고객으로 보도록 한다.	40분	전지, 마커, 크레파스, 테이프
	난동을 부리는 시민1	시민과의 불가피한 충돌이 일어나는 딜레마 상황을 예화를 가지고 연습한다.	20분	진행자 자료
	저항하는 시민2	시민과의 불가피한 충돌이 일어나는 딜레마 상황을 예화를 가지고 연습한다.	20분	진행자 자료
정리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마지막으로 학습을 바탕으로 시민을 고객으로 볼 수 있는 다짐을 한다.	10분	편지지, 볼펜
			총150분	

2) 여성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합니다.

□ 교육 목적

- 변화하는 남녀간의 역할을 학습함으로써 성인지적 감수성을 가지고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한다. 다른 성에 대한 이해 또한 서로의 차이를 학습함으로써 가능하다. 이 학습으로 남녀가 함께 더불어 사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경찰이 되도록 한다.

□ 교육 구성

단계	주요 프로그램	목 표	소요 시간	준 비 물
도입	나의 아리랑 곡선 그려보기	학습자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아리랑곡선을 그리고 나눔으로써 학습자 서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힌다.	20분	1인당 마커 하나씩, 5절지 1장씩
전개	남 과 녀	남성 중심적이고 남성주도적인 조직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여성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줄인다.	30분	철관
	나는 셔터맨이 하고 싶어	학습자가 사회에서의 성역할의 변화에 대해 알도록 한다.	30분	
	여성이 그럴 수가?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동료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된다는 점을 알게 한다.	30분	진행자 자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일터에서 발생한 남성권위적인 상황을 드러내고 양성 평등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20분	
정리	인권지침을 따라 합시다, 인권지침	현장에서의 일어날 수 있는 딜레마 상황에서의 인권지침을 학습한다.	20분	
			총150분	

3) 오늘의 청소년, 우리와는 다르게 성장합니다.

□ 교육 목적

-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소중한 세대임을 학습하고 청소년의 문제를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자녀를 둔 경찰이라면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자녀와의 원활한 소통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 교육 구성

단계	주요 프로그램	목 표	소요 시간	준 비 물
도입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의 삶의 목적 선언문을 작성해보므로써 서로를 이해한다.	20분	진행자 자료, A4종이와 필기도구, 작업지
전개	인권지킴이로서의 경찰	경찰의 인권지킴이로서의 자기직분을 이해하게 한다.	20분	공, 칠판, 분필
	나의 인권존중/침해의 역사 1	학습자의 개인적 인권의 존중과 침해의 역사를 가족과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돌아봄으로써 인권존중의 의미를 알게 한다.	20분	진행자 자료
	나의 인권존중/침해의 역사 2	학습자 자신의 개인적 인권의 존중과 침해의 역사를 가족과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돌아봄으로써 인권존중의 의미를 알게 한다.	40분	진행자 자료
	바로 내 아들이 문제 청소년인데	자신의 청소년시절을 돌이켜 본 후에 현재 청소년을 이해하는 공감대를 넓힌다.	20분	
	자라나는 나무, 청소년	자신의 청소년 시절을 돌이켜본 후에 현재 청소년을 이해하는 공감대를 넓힌다.	20분	진행자 자료
정리	나도 나무이다	마지막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경찰을 이해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함께 함으로써 정리한다.	10분	
			총150분	

4) 다양성과 차이 존중하기

□ 교육 목적

- 세계화의 추세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도 점점 요구되는 지구촌 주민으로서의 의식 성장을 돕는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인종 등에 대해 개방적인 생각과 태도를 갖게 한다.

□ 교육 구성

단계	주요 프로그램	목 표	소요 시간	준 비 물
도입	우리는 이렇습니다.	같은 경찰끼리 얼마나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지를 알면서 친숙해지게 한다.	20분	
전개	젊은 여인의 죽음	합의를 보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음을 확인한다.	30분	진행자 자료, 전지 혹은 OHP필름, 테이프, 마커
	우리안의 외국인	이미지는 사람의 태도나 행동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는 어떠한 개념에 대해 그리고 어떤 나라나 문화에 대해 저마다 특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드러내 객관화하고 그것이 형성된 경위를 살펴본다.	30분	여섯 개의 시선(국가인권위원회 비디오), 종이크드, 매직펜, 스티커, 모조전지
	너도 다른 나라에 살아 봐야 해	차별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해한다.	30분	철판, 분필, 편지지, 볼펜, 진행자용 자료
	야 임마와 영어선생님	이주노동자의 상황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하게 한다.	20분	진행자 자료
정리	경찰! 우리 편이어야지	경찰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	20분	
			총150분	

5) 경찰을 인권수호자로

□ 교육 목적

- 자신의 일터는 얼마나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갖고 있는지 살펴본다. 일터의 인권존중 문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경찰들의 과제를 함께 찾아내고 전략을 만들어본다.

□ 교육 과정

단계	주요 프로그램	목 표	소요 시간	준 비 물
도입	나의 장점, 나의 자랑	나의 장점을 말함으로써 학습자간에 친밀도를 높이고 학습에 필요한 긍정적 분위기를 만든다.	20분	
전개	인권퀴즈	학습자의 인권지식상태를 점검하여 학습자의 교육수준을 존중하고, 이 교육과 인권지식 전달교육과의 차별성을 알린다.	20분	퀴즈
	인권이 꽃피는 경찰동산	상하관계에서 특히 경찰조직이 어느 정도 인권존중/침해를 받고 있는지 점검한다.	20분	1인당 5절지 1매, 크레파스
	경찰동산 리더	인권친화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리더십훈련을 한다.	40분	진행자 자료
	나라면 어떻게- 어떤 여경사의 눈물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 경사의 이야기를 통해 인권보호에 모순을 일으키는 두 가치의 양립 가능성을 모색해본다.	30분	진행자 자료
정리	나의 미래자화상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인권지킴이로서의 미래를 꿈꾸게 한다.	20분	
			총150분	

인권감수성 키우기 프로그램

워크시트(work sheet) 모음

아래와 같은 작업만족도항에 점수를 주세요.

<p>① 대단히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그저 그럼 ④ 약간 만족 ⑤ 아주 만족</p>

1.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 ()
2. 업무자체의 성격 ()
3. 업무에 드는 시간 ()
4.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한 사회적 가치 ()
5. 업무에 따른 장려체계 ()
6. 월급 ()
7. 보너스와 포상 ()
8. 승진정책과 관행 ()
9. 업무환경과 조건 ()
10. 전문적 발전기회 ()
11. 컴퓨터시스템 지원 ()
12. 사무직원 보조 ()
13. 관리지원 ()
14. 인정과 이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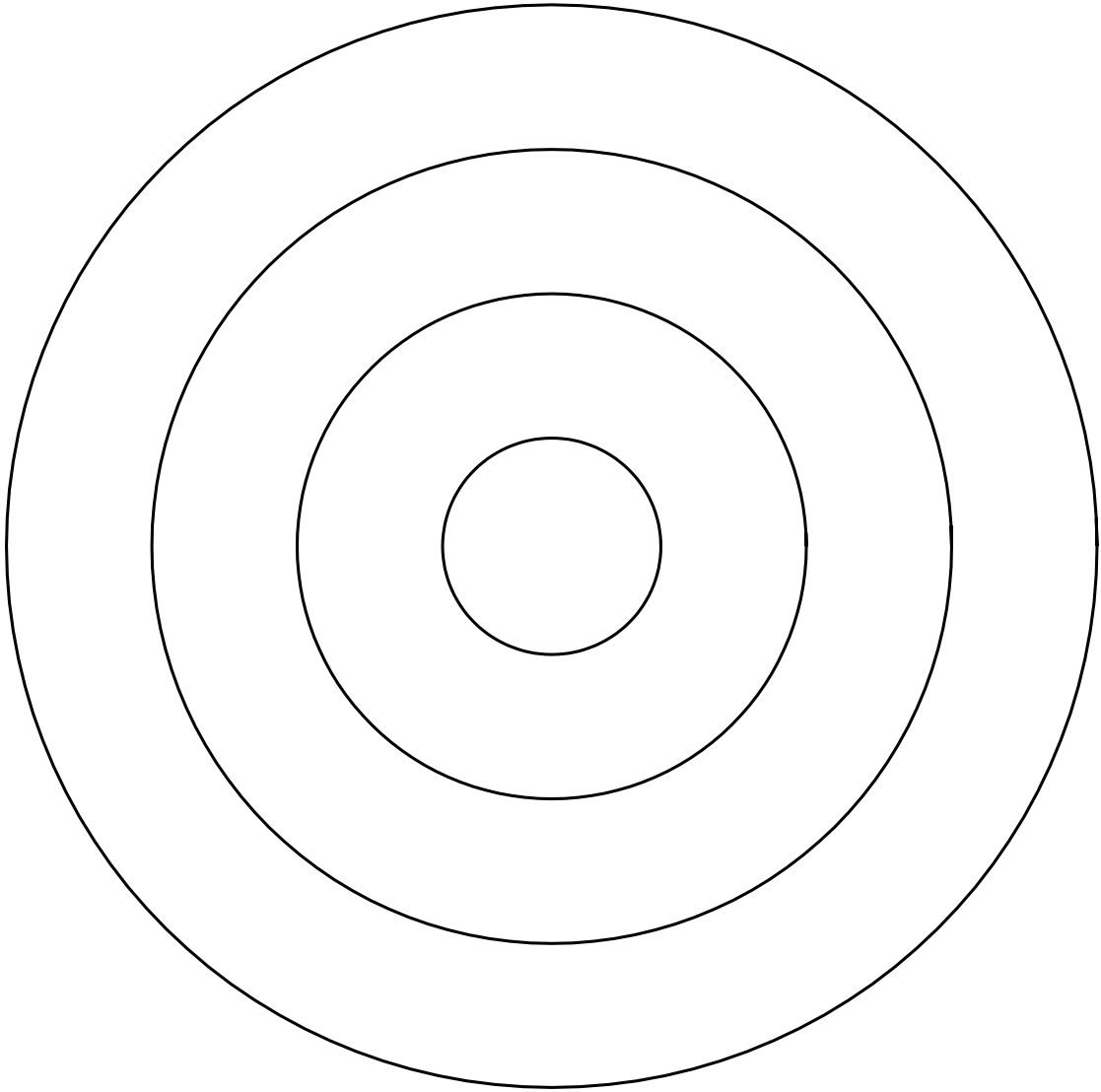
총점 _____

SWOT 분석

좋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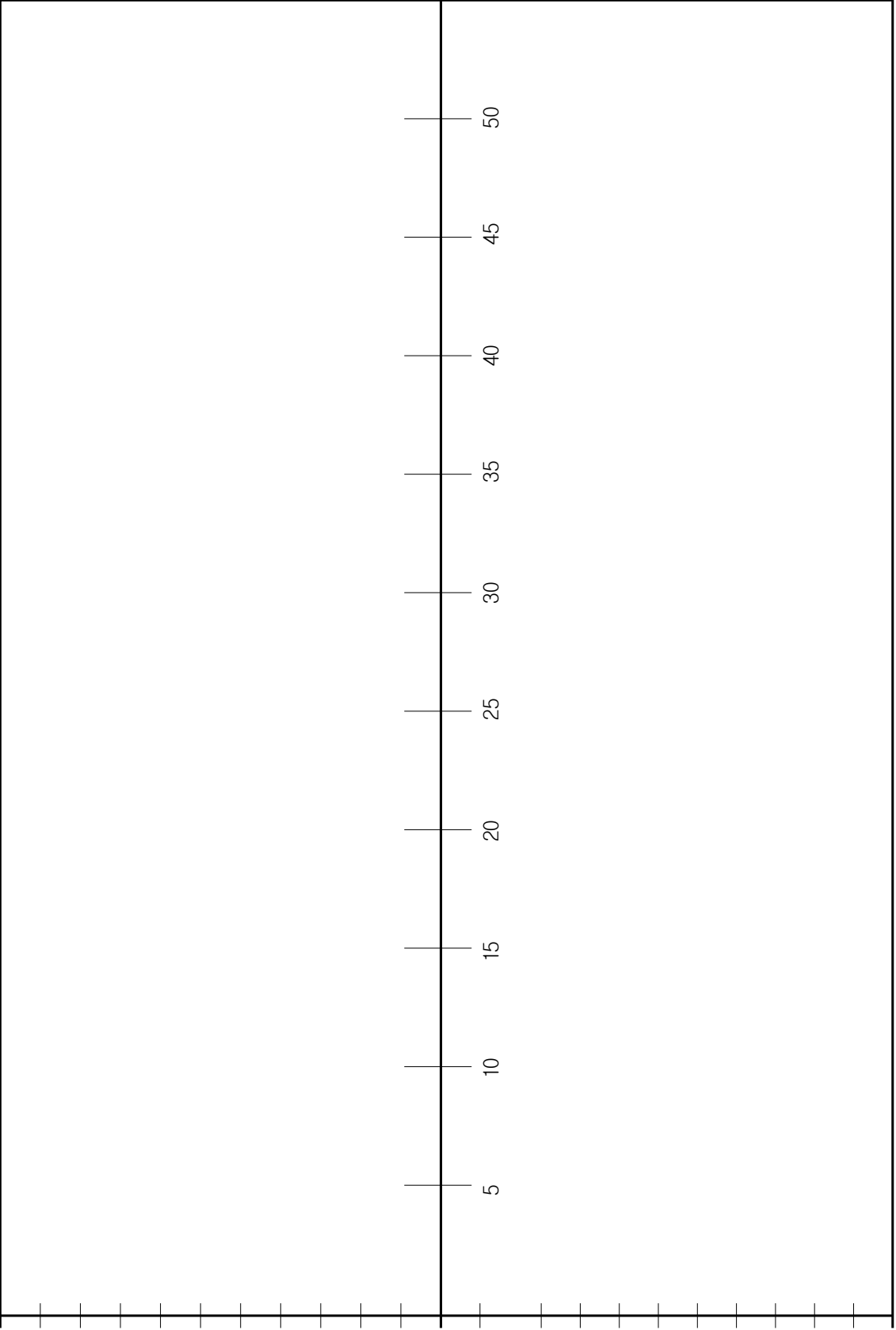
	강 점 (Strength)	기 회 (Opportunity)	
과 거	약 점 (Weakness)	위 험 (Threat)	미 래

나쁜점



Blank writing area with horizontal lines.





목적선언문

아버지의 개인적인 신조	어머니의 개인적인 신조
가치관	가치관
가장 중요한 업적	가장 중요한 업적
실망	실망
부족한 요소	부족한 요소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가? 그리고 어떤 교훈을 가르쳐주었는가?	어머니는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가? 그리고 어떤 교훈을 가르쳐주었는가?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정신을 불어넣어 주었는가?	어머니는 나에게 어떤 정신을 불어넣어 주었는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사주었는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사주었는가?

경찰과 거리의 청소년

경찰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가가면서 말한다.

경 찰 :

청소년 :

경 찰 :

청소년 :

경 찰 :

청소년 :

경 찰 :

생 태 계

나의 비전 선언문

프로그램 개요 III

갈등해결 능력 향상 프로그램

진행 : 장 윤 경

□ 프로그램 개요

시 간	단계별 교육 내용	교수방법 및 특징	준비물
9:00 ~ 9:40	갈등해결 능력 향상 교수법 연습 ◦ 갈등 드러내기 인권과 관련되어 경험했던 사건들 중에 잊혀지지 않는 사건을 기억하여 색지에 적는다.	카드 브레인라이팅	색지/크레파스 /접착테이프
9:40 ~ 11:20	갈등해결 능력 향상 교수법 연습 ◦ 갈등 유형 테스트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테스트를 통해 객관화 해본다. 테스트를 통해 각 유형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 인간관계와 실제 이익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테스트 결과로 나온 5가지 유형을 팀으로 나누고 그 유형의 <u>장점 3가지, 단점 3가지</u> , 갈등을 해결하는데 <u>걸림돌이 되는 유형</u> 을 브레인스토밍 후 발표	* 테스트지-자료집에 수록 * 전지를 반으로 나눈 크기 5장/ 크레파스5통/ 접착테이프
11:20 ~ 12:00	갈등해결 능력 향상 교수법 연습 ◦ 문제해결의 4원칙 배우기 - 사람과 문제의 분리 - 입장에서 실익으로 - 상생적 대안 만들기 - 객관적인 기준의 적용	4가지 원칙에 대한 갈등상황을 예를 들어 해결책을 찾아보면서 습득	빔프로젝트 /노트북
12:00 ~ 13:30	점심 식사		
13:30 ~ 14:30	의사소통 기술 향상 교수법 연습 ◦ 적극적인 듣기 적극적으로 듣는 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임을 체험한다. 그리고 평상시에 대화를 나눌 때 자신의 습관을 돌아본다. 또한 상호작용이 잘되는 대화 방식에 대해 이해한다. ◦ 바꾸어 말하기 부정적인 감정이 담긴 말을 문제의 초점을 직시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언어로 바꾸어 말하는 연습을 한다. 또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충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한다. ◦ 나 전달법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나를 주어로 나의 느낌, 바램, 필요, 우려, 관심사, 상황 등을 표현하여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이나 상황을 올바르게 전달한다.	*카드 브레인라이팅 *팀별 브레인스토밍	* 색지/ 크레파스/ 접착테이프 * 시나리오-자료집에 수록

시 간	단계별 교육 내용	교수방법 및 특징	준비물
14:30 ~ 15:40	갈등해결 능력 향상 교수법 연습 ◦ 협상 실습 협상이란 갈등 당사자가 서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자유롭게 벌이는 의견 교환 행위로 역할극을 통해 협상하는 실습을 한다.	*시나리오를 익힌 후 역할극 *각자의 시나리오를 다른 참가자에게 절대로 보여주어서는 안 됨	시나리오-자료 집에 수록
15:40 ~ 16:00	갈등해결 능력 향상 교수법 연습 ◦ 중재의 3원칙 배우기 - 중립성 - 자율성 - 비공개 ◦ 중재의 5단계 배우기 - 도입단계 - 이야기하기와 듣기 단계 - 쟁점규명 단계 - 문제풀기 단계 - 합의 단계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동하여 중재하는 원칙과 과정을 습득	빔 프로젝트 / 노트북
16:00 ~ 17:30	갈등해결 능력 향상 교수법 연습 ◦ 중재 실습 중재라는 것은 당사자간 협상이 어려움을 겪을 때 3자가 개입해서 당사자들의 문제 해결 과정을 돕는 것을 말한다. 중재 훈련을 위해 역할극을 하여 당사자들의 이해나 요구를 각각 인정하고 이에 근거한 합의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시나리오를 익힌 후 역할극 *각자의 시나리오를 다른 참가자에게 절대로 보여주어서는 안 됨	시나리오-자료 집에 수록

갈등해결 능력 향상 프로그램

워크시트(work sheet) 모음

개인 간 갈등 유형 테스트

다음은 개인 간 갈등(Personal Conflict)을 다루는 스타일을 조사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당신의 의견이 다른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완성하십시오. A-J는 이견에 대한 즉흥적 반응이고, K-T는 이견이 깊어졌을 때 반응을 나타냅니다. 만약 생각나는 갈등의 경우가 있다면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작성을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문장아래 반드시 하나의 숫자에만 표시를 하십시오.

가)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나는.....

A. 설사 현저한 이견차가 있을지라도 모든 의견이 동등하게 고려되고 검토될 수 있도록 열어놓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그렇다

B.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으므로 나의 의견과 입장을 남들에게 분명히 이해시키는데 노력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그렇다

C. 내 입장을 분명히 하지만, 그 수위를 조금 낮추어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그렇다

D. 토론에서 잠시 벗어나 불편한 긴장상황을 피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그렇다

E. 내 개인적 목표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더 많이 신경을 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그렇다

F. 나의 의견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고려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그렇다

G. 나의 의견을 설명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의견도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그렇다

H.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목적에 우선순위를 둔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그렇다

I. 다름이나 차이가 일을 진행함에 있어 크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그렇다

J. 어느 정도 양보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을 얻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그렇다

나) 만약 이견이 지속되거나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하면, 나는.....

K.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더욱 활발하게 토론에 참가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그렇다

L. 남의 기분에 맞추기보다 나의 신념이 다른 사람에게도 진리로 보여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그렇다

M. 내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행동하지만, 내가 반드시 찾아야 할 부분은 찾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그렇다

N. 내 의견을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며, 남의 요구에 조금 뒤로 물러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그렇다

O. 내 주장은 잠시 접어두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더욱 신경을 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그렇다

P. 다른 사람과의 직접적 접촉을 줄이고, 적당하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그렇다

Q. 우선 결정해야 할 상황을 해결하고 나중에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그렇다

R. 다른 사람의 감정을 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그렇다

S. 다른 사람의 요구를 수용하는 만큼 나의 요구도 관철되도록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그렇다

T. 중용과 타협을 이끌어냄으로써 일을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그렇다

다) 결과 보기

모두 마친 후에는 각각 해당되는 숫자를 다음의 빈칸에 채우시오. 그 후 두 숫자를 합산하면 됩니다.

A:	K:	B:	L:	C:	M:	D:	N:	E:	O:
G:	S:	H:	Q:	J:	T:	I:	P:	F:	R:
차분	고조	차분	고조	차분	고조	차분	고조	차분	고조
협력		강요/대립		타협		회피		양보/순응	

높은 숫자에서 낮은 숫자 순으로 합산된 점수와 대응방식을 기재하십시오.

차분

고조

갈등이 처음 인지 되었을 때의 반응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고조되었을 때 반응

점수

대응방식

점수

대응방식

라) 보충 설명

이번 조사 자료는 각각 두개의 상황에 다섯 가지 대응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차분에 해당되는 점수는 이점이 처음으로 나타날 때 흔히 나타나는 반응을 표시하고 있

고, 고조에 해당되는 점수는 의견차이가 잘 해소되지 않고 감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점수가 높은 부분일수록 주로 대응하는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방식이 여러분이 가장 일반적이고 쉽게 갈등에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점수(대체로 최고점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는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방식인데 소위 Backup Styl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 방식에 걸쳐 점수가 비슷하다면 갈등대응에 있어 어느 특정 방식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Mennonite Conciliation Service, *Mediation and Facilitation Training Manual : Foundations and Skills for Constructive Conflict Transformation (4th Edition)*
p.64-66

바뀌 말하기 실습 시나리오

1. “아니, 그럼 교통사고가 난 게 다 나 때문이라는 거요? 이 사람들이 정말 법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군. 이것들이 내가 봉으로 보여? 이봐, 당신들이 다 잘못된 거야.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거나 해. 가만히 있으면 무식한 티나 안 나지?”

→

2. 저 놈을 정말..... 지난번에 사고 쳤을 때 바로 감빵에 집어넣든지 절판을 냐어야 하는 건데.... 인생이 불쌍해서 봐 줬더니 이제는 나한테까지 기어올라?....

→

3. “야. 임마! 박재혁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듣자 듣자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군. 너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순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잖아!

→

4. “야! 김순경 넌 까마득한 후배인 주제에 버릇없이 인사도 안 해?”

→

나 전달법 실습 시나리오

1. “그런 일은 나한테 먼저 보고를 했어야지, 박순경은 내가 직속상사라는 것을 모르나? 그렇게 멍청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 정말 아래 위도 모르는 바보 아냐.”

→

2. “야 이 죽일 놈아, 그래 고소해봐라. 너는 귀가 먹은 놈이냐? 아이큐 수준이 새대 가리냐? 내가 너 체포할 때 입이 부르트도록 한 얘기 못 들었냐? 기억 안 나냐? 내가 널 왜 체포하는지 말을 안했다고? 그래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이게 어디서 주워들은 것은 있어서. 경찰을 상대로 술수를 쓰려고! 그냥, 확!

→

3. 아니, 지금 여기가 어딘데 들어와서 행패야? 당신 깡패야? 아니면 무식해서 그래? 너 행패부리라고 국민들 세금으로 밤새면서 일하고 있는 줄 알아? 술 먹었으면 조용히 자빠져서 자던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까불어. 여긴 경찰서야, 경찰서란 말 이야.

→

협상 실습 시나리오 1 - 수사과정 상의 불법행위 분쟁

강력반 박형만 형사

□ 사건

경찰 생활 7년 만에 오늘처럼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보기는 처음이다. 아침부터 서장님한테 불려가 심한 소리까지 듣고..... 내가 폭력 경찰이라니.... 경찰 생활에 회의까지 온다. 조중택, 이 자식 정말 나하고 전생에 원수였어도 보통 원수가 아니었나보다 사사건건 이렇게 내 발목을 잡아 경찰로서의 나의 명예에 늘 치명타를 안기고 있다. 몇 달 전부터 우리 서 관할 지역에는 강도가 나타나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다. 우리 강력반 형사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뛰어 다녔다. 그 결과 수사선상에 5명의 용의자가 떠올랐고 결국 피해자들의 목격과 증거를 종합한 결과 전과 3범의 조중택이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우리는 조중택을 긴급체포했고 그 과정에서 조중택은 우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등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제는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생난리를 치기까지 했다. 심지어 오늘 새벽에는 가혹수사로 인해 아프다며 병원에 실려 가기까지 한 것이다. 서장님 말씀에 의하면 조중택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허리병 있으니 밤샘수사는 양해해 달라고 인간적으로 몇 번이나 호소를 했는데 내가 잠도 못 자게 하면서 강도가 무슨 허리병이라며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아픈 허리를 때리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서장님은 병원에 가서 달래라는데 정말 난 가혹수사를 한 적도 없고 그 놈이 허리병이 있다는 말을 한 것을 들은 적도 없는데 뭘 달래라는 것인지..... 기가 막힐 뿐이다. 이렇게 법을 악용하는 범죄자들을 그냥 달래라고..... 난 못하겠다. 정말 못하겠다.

□ 배경

나와 우리 경찰서 동료 형사들은 정말 사회에 해가 되는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위장병까지 생기면서 열심히 뛰고 있다. 우리의 이런 노력이 좀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하지만 쏟아지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요사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범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사건 해결이 빠를수록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현실에서 미적미적 인권을 보호하느라 다른 사건의 범인을 놓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고 욕심을 부리다보면 범인을 조사하는 시간이 길어져 밤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조중택의 며칠동안의 행동은 엄살에 불과하다. 지난번에 용의자로 잡혔을 때도 인권 운운하면서 수사를 혼란에 빠뜨렸으나 결국은 조중택의 쇼로 밝혀서 실형을 받았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또 이런 짓을 한 것이다. 지금 조중택은 나에게 복수를 하려고 또 다시 쇼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나쁜 놈! 난 그 장단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

□ 관심사

나는 정말 좋은 경찰이 되고 싶었다. 권위적이지 않아도 사건 해결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단순히 범인 잡는 경찰이 아니라 그야말로 민중의 지팡이가 되고 싶다. 약자들을 위한 경찰.... 그런 경찰..... 그런데 이렇게 악질 범인을 만나 내가 공격을 받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있을까?

협상 실습 시나리오 2 - 수사과정 상의 불법행위 분쟁

강도 용의자 조 중 택 用

□ 사 건

박형사에게 또 다시 잡혔다. 박형사는 피도 눈물도 없는 형사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인간으로 취급한 적은 없는 것 같다. 내가 아무리 범죄자라도 그렇지 그렇게 개물 듯이 해서 긴급체포할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아는 형에게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도 무시하고 무조건 강도 행각을 불라니..... 목격자도 여럿 있으니까 빠져나갈 생각 말란다. 그리고 벌써 이틀째 새벽까지 조사를 하는데 죽을 맛이다. 이러다가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불게 생겼다. 이게 바로 가혹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냐고요.

게다가 지난번 감옥에 갔을 때부터 시작된 허리병 때문에 어느 순간은 앉아 있기도 힘든데 몇 시간씩 앉혀 놓고 자꾸 불라고 하니 정말 환장할 노릇이다. 아무리 허리가 아프다고 해도 눈도 깜짝 안한다. 텔레비전 보니까 높은 놈들은 감옥에 있다가도 조금만 아파도 병원 특실로 옮겨 주던데 잠깐 쉬게 만 해달라는데 머리를 쥐어박고 허리를 때리고 더 아프게 하니 참 내 인생도 딱하기만 하다.

나도 성깔 있는 놈인데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얼핏 주위들은 얘기로는 범죄자라도 인권이 있고 경찰도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해서 가혹수사를 한다고 깡판을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병신 될 것 같아서 지랄을 했더니.... 오늘 새벽에 드디어 나도 높은 놈들처럼 병원으로 옮겨졌다. 물론 특실도 아니고 좋은 병원도 아니지만.... 그런데 그 독종 박형사 놈은 코빼기도 안 보인다. 역시 독한 놈이다.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 배 경

활동 무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든지 해야지 이번에도 또 박형사에게 잡혔다. 재수 없게도.... 박형사는 우리들 사이에서 독종으로 소문나 있다. 박형사에게 걸린 사건은

어떻게 해서든 해결이 난다는 전설이 있다. 결국 나도 출소 후 처음으로 한 작업에서 결국은 잡히고 말았다. 그런데 난 너무 억울한 것이 내가 왜 몇 달 동안 일을 저지른 강도 용의자란 말이냐고요. 난 정말 그날 한 건 한 것밖에 없는데 말이다. 정말 억울하다. 그런데 박형사에게 잡힌 이상 앞이 캄캄하다. 이러다 다른 새끼가 저지른 죄까지 뒤집어쓰고 큰집에서 썩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 관심사

나도 오죽하면 강도를 해먹고 감빵 가기를 밥 먹듯이 하고 살겠는가? 세상이 나를 자꾸 버리니까 나도 세상을 버릴 수밖에....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나도 이렇게 까지는 안됐겠지?.....

중재 실습 시나리오 1 - 주택가 주차 분쟁

언덕동 187번지 3통 1반 통장 김 언 남 씨 用

□ 사 건

내가 사는 동네는 부유한 동네는 아니지만 비교적 깨끗하고 사람들의 인심도 좋은 아직은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동네였다. 그런데 두 달 전에 우리 집 바로 앞 골목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야채 장사하는 정씨가 이사 오면서 우리 동네의 평화는 깨지기 시작했다. 정씨는 야채 파는 트럭을 남의 집 대문 앞이든 장사를 하는 집 문 앞이든 아무데나 주차를 해 놓곤 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정씨가 잘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주차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좋게 말했다. 그러면 그 날 저녁에는 반드시 싸움이 났다. 정씨는 술이 만취되어 그 말을 한 사람 집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우자고 난리였다. 또 당사자가 나가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다. 난 통장으로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정씨와 술을 마시면서 타이르기도 하고 따끔하게 질책을 하기도 했는데 막무가내였다.

그러더니 2주전부터 정씨가 우리 집 대문 앞에 차를 대기 시작했다. 나는 우리 집에도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주차를 해야 하니까 다른 곳에 주차를 하라고 정씨에게 얘기했다. 그러나 정씨는 일부러 그런다는 듯이 들은 척도 안했다. 나는 매일 정씨와 실랑이를 했고 한 번은 내가 대문 앞에서 있는데도 나를 차로 치일 기세로 달려 주차를 했다. 나는 너무 놀라 비켜 설 수밖에 없었는데 기가 막힐 뿐이었다. 나는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고 일주일 전 밤에 주차 해 놓은 정씨 차바퀴에 핑크를 냈다. 어김없이 정씨는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그 날 밤 우리 집 대문 앞에 음식 쓰레기로 범벅을 해 놓았고 다음 날은 드릴로 대문을 뚫어 놓았다. 또 다음 날은 창문에 돌을 던져 아래층 창문 3개를 모두 깨뜨렸다. 나의 아내와 아이들은 며칠째 무서워서 잠도 못자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

□ 배경

내가 화를 자제 못하고 정씨 트럭에 핑크를 낸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오죽했으면 내가 그랬을까.... 동네 사람들은 계속 통장인 나에게 이 문제를 해달라고 난리 들고 정씨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해서 너무 화가 나서 욕하는 마음에 핑크를 냈다. 그러나 핑크한번 냈다고 저렇게 폭력을 쓰는 정씨를 이해할 수가 없다. 꽤 씹하다. 나 이도 나보다 어린 것이 버르장머리 없이 구는 것도 용서할 수 없고 어른이 말을 하면 한번쯤 생각이라도 해 볼 것이지 막무가내로 덤비고 있다니.... 경찰서에서 혼 줄을 내 줬으면 좋겠다. 서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했으니 잘 해결될 수 있겠지?.....

□ 관심사

나는 10여년을 우리 동네 통장으로 열심히 일을 했고 또 평화로운 우리 동네를 보면서 내가 이 동네 통장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정씨 때문에 나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우리 동네의 평화가 깨져서 너무 화가 난다. 정씨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 우리 동네가 다시 평화로워지고 나도 통장으로서 본분을 다한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한다.

중재 실습 시나리오 2 - 주택가 주차 분쟁

언덕동 187번지 3통 1반 다세대 주택 세입자 정 옹 태 씨 用

□ 사 건

부동산 사무실에서 언덕동은 조용하고 깨끗하며 정말 좋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했다. 처음 집을 보러 왔을 때 인상도 좋고 해서 나는 내 형편에 조금 비싸지만 선뜻 이사를 했다. 그런데 이사 온 지 일주일이 되었을 때부터 동네 사람들이 나를 못살게 굴기 시작했다. 내가 사는 다세대 주택에는 주차장이 비좁아서 늦게 들어오는 나는 늘 차를 댈 때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차가 없어 보이는 집 앞에 차를 대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그 집 주인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나만 보면 아무 대나 주차한다고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네 사람들은 나에게 적의를 품기 시작했고, 나만 보면 못 배워서 예의도 모르는 놈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난 너무 억울해서 어느 날 술을 먹고 술주정을 했는데 그게 또 화근이 되었다. 술주정뱅이까지 되어 버린 것이다. 난 그래도 통장님이 자분자분 타이르는 것이 그나마 마음이 놓여 하루는 통장님 집 앞에 주차를 했는데 다음날 보니 타이어에 핑크가 나 있었다. 그래도 믿었던 통장님인데 있는 놈이 더 한다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내 차에 핑크를 내다니..... 난 정말 참을 수가 없었다. 욕하는 마음에 대문 앞에 쓰레기를 버렸고, 계속되는 통장님의 횡포에 나도 맞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더니 결국은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불법 주차와 사유재산 훼손, 정신적 충격 등등으로.... 정말 세상이 무섭다.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더 못 살게 굴다니.... 나도 이제 참지 않겠다. 내 트럭을 망가뜨린 비용과 차 고치느라 장사를 할 수 없었던 손해를 다 받아내야겠다. 어디 한번 붙어보자구요. 나도 한다면 한다는 놈이니까..... 붙어보자구요....

□ 배 경

나는 언덕동으로 이사 오면서 사람 냄새나는 동네에서 잘 살고 싶었다. 내 형편에

좀 비싼 전세 값이지만 동네가 마음에 들어 선뜻 이사를 왔고 은행 이자를 빨리 갚고 싶어서 야채장사가 끝나면 아르바이트로 물건을 나르는 일도 했다. 그래서 늘 집에 늦게 올 수 밖에 없었고 주차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좋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 이해해 줄 거라 믿었는데 아니었다.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면 못 참는 사람들이었다. 특히 형처럼 대해 주던 통장님도 결국은 자신의 집 앞에 주차를 하자 타이어에 펑크를 내고, 차에 날카로운 것으로 흠집을 내고, 엔진 위에 물을 부어 놓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섭게 했다. 난 믿었던 통장님의 이중성에 너무 화가 나서 술을 먹고 창문에 돌을 던지기까지 했다. 내가 물론 잘못했지만 난 통장님처럼 두 얼굴은 아니다.

□ 관심사

상막한 도시 생활에 신물이 난 나는 언덕동이 너무 좋았다. 따뜻한 사람들의 시선, 평온한 얼굴들.... 그러나 다 허상이었던 말인가?... 난 평화롭게 형, 아우, 아들 대하듯 잘 살고 싶었을 뿐인데....

부 록

1. 대한민국헌법
2. 국가인권위원회법
3. 세계인권선언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5. UN경찰관 행동강령
6. 국제사면위원회 경찰관 인권지침
7. 경찰의 인권침해 진정사례 정리

大韓民國憲法

制	定	1948.	7.	17.		
改	正	1952.	7.	7.		
		1954.	11.	29.		
		1960.	6.	15.		
		1960.	11.	29.		
全	文	改	正	1962.	12.	26.
		1969.	10.	21.		
全	文	改	正	1972.	12.	27.
全	文	改	正	1980.	10.	27.
全	文	改	正	1987.	10.	29.

前 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1987年 10月 29日

第 1 章 總 綱

第1條(國號·政體·國體·主權)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2條(國民의 要件, 在外國民의 保護) ①大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요건은 法律로 정한다.

②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在外國民을 보호할 義務를 진다.

第3條(領土)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第4條(平和統一政策) 大韓民國은 統一을 指向하며, 自由民主의 基本秩序에 입각한 平和的 統一 政策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第5條(侵略的 戰爭의 否認, 國軍의 使命과 政治的 中立性) ①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유지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

②國軍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수행함을 使命으로 하며, 그 政治的 中立性은 준수된다.

第6條(條約과 國際法規의 效力, 外國人의 法的地位) ①憲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條約과 一般의 國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②外國人은 國際法과 條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位가 보장된다.

第7條(公務員의 地位·責任·身分·政治的 中立性) ①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第8條(政黨) ①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

②政黨은 그 目的·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政黨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黨運營에 필요한 資金을 補助할 수 있다.

④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裁判所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裁判所의 審判에 의하여 解散된다.

第9條(傳統文化의 繼承·發展·民族文化의 暢達) 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발전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 2 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第10條(人間의 尊嚴성과 基本的 人權의 保障)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保障할 義務를 진다.

第11條(平等權, 特殊階級制度의 否認, 榮典의 效力) ①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教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③勳章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第12條(身體의 自由, 自白의 證據能力) ①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押收·搜索 또는 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는 強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強要당하지 아니한다.

③逮捕·拘束·押收 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長期 3年이상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받지 아니하고는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하지 아니한다.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者의 家族등 法律이 정하는 者에게는 그 이유와 日時·場所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

를 가진다.

⑦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

第13條(刑罰不遯及·一事不再理, 遯及立法의 禁止, 連坐制禁止) ①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訴追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遯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財産權을 剝奪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親族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14條(居住·移轉의 自由) 모든 國民은 居住·移轉의 自由를 가진다.

第15條(職業選擇의 自由)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第16條(住居의 自由) 모든 國民은 住居의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대한 押收나 搜索을 할 때에는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第17條(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모든 國民은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18條(通信의 自由) 모든 國民은 通信의 秘密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19條(良心의 自由)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第20條(宗教의 自由) ①모든 國民은 宗教의 自由를 가진다.

②國教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教와 政治는 分離된다.

第21條(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①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②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通信·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④言論·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言論·出版이 他人의 名譽나 權利를 침해한 때에는 被害者는

이에 대한 被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2條(學問·藝術의 自由, 著作權등의 保護) ①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著作者·發明家·科學技術者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보호한다.

第23條(財産權의 保障과 制限) ①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財産權의 行사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正當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24條(選舉權)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舉權을 가진다.

第25條(公務擔任權)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第26條(請願權)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27條(裁判을 받을 權利, 刑事被告人의 無罪推定, 陳述權)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領域안에서는 중대한 軍事上 機密·哨兵·哨所·有毒飲食物供給·捕虜·軍用物에 관한 罪중 法律이 정한 경우와 非常戒嚴이 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事法院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④刑事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

⑤刑事被害者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件의 裁判節次에서 陳述할 수 있다.

第28條(刑事補償) 刑事被疑者 또는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法律이 정하는 不起訴處分을 받거나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正當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9條(國家·公共團體의 賠償責任) ①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正當한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②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기타 法律이 정하는 者가 戰鬥·訓練等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報償외에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

第30條(犯罪行爲로 인한 被害救助) 他人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生命·身體에 대한 被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로부터 救助를 받을 수 있다.

第31條(교육을 받을 權利·義務·平生教育振興) ①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均등하게 教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教育과 法律이 정하는 教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義務教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教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의 自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障된다.

⑤國家는 平生教育을 振興하여야 한다.

⑥學校教育 및 平生教育을 포함한 教育制度和 그 운영, 教育財政 및 敎員의 地位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32條(勤勞의 權利·義務, 最低賃金制, 女子·年少者保護, 國家有功者에 대한 機會優先) ①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經濟的 方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과 適正賃金의 保障에 노력하여야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賃金制를 施行하여야 한다.

②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내용과 조건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③勤勞條件의 基準은 人間의 尊嚴性을 保障하도록 法律로 정한다.

④女子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雇傭·賃金 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不當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⑤年少者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有功者·傷痍軍警 및 戰歿軍警의 遺家族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優先的으로 勤勞의 機會를 부여받는다.

第33條(勤勞者의 團結權등) ①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

體行動權을 가진다.

③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34條(社會保障)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을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⑤身體障礙者 및 疾病·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35條(環境權) ①모든 國民은 健康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環境權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③國家는 住宅開發政策등을 통하여 모든 國民이 快適한 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36條(婚姻과 家族生活保障, 母性保護, 國民保健保護) ①婚姻과 家族生活은 개인의 尊嚴과 兩性の 平等을 기초로 成立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보장한다.

②國家는 母性の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國民은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37條(國民의 自由와 權利의 尊重·制限) ①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으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第38條(納稅의 義務)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39條(國防의 義務)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②누구든지 兵役義務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 3 章 國 會

第40條(立法權) 立法權은 國會에 속한다.

第41條(國會的 構成) ①國會는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舉에 의하여 選出된 國會議員으로 構成한다.

②國會議員의 數는 法律로 定하되, 200人이상으로 한다.

③國會議員의 選舉區와 比例代表制 기타 選舉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定한다.

第42條(議員의 任期) 國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第43條(議員의 兼職制限) 國會議員은 法律이 定하는 職을 兼할 수 없다.

第44條(議員의 不逮捕特權) ①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期中 國會的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②國會議員이 會期전에 逮捕 또는 拘禁된 때에는 現行犯人이 아닌 한 國會的 要求가 있으면 會期中 釋放된다.

第45條(發言·表決의 免責特權)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行한 發言과 表決에 관하여 國會외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46條(議員의 職務, 地位의 濫用禁止) ①國會議員은 清廉의 義務가 있다.

②國會議員은 國家利益을 우선하여 良心에 따라 職務를 行한다.

③國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하여 國家·公共團體 또는 企業體와의 契約이나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産上의 權利·이익 또는 職位를 취득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第47條(定期會·臨時會) ①國會的 定期會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集會되며, 國會的 臨時會는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4分の 1이상의 要求에 의하여 集會된다.

②定期會의 會期는 100日을, 臨時會의 會期는 30日을 초과할 수 없다.

③大統領이 臨時會의 集會를 要求할 때에는 期間과 集會要求의 理由를 명시하여야 한다.

第48條(議長·副議長) 國會는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選出한다.

第49條(議決定足數와 議決方法) 國會는 憲法 또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50條(議事公開의 原則) ①國회의 會議은 公開한다. 다만,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거나 議長이 國家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公開하지 아니한 會議內容의 公表에 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51條(議案의 次會期繼續) 國會에 제출된 法律案 기타의 議案은 會期中에 議決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國會議員의 任期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2條(法律案提出權)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제출할 수 있다.

第53條(法律의 公布, 大統領의 拒否權, 法律案의 確定·發效) ①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에 移送되어 15日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②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第1項의 期間내에 異議書를 붙여 國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國會의 閉會중에도 또한 같다.

③大統領은 法律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法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요구할 수 없다.

④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再議에 붙이고, 在籍議員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の 2이상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확정된다.

⑤大統領이 第1項의 期間내에 公布나 再議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확정된다.

⑥大統領은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法律을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5項에 의하여 法律이 확정된 후 또는 第4項에 의한 確定法律이 政府에 移送된 후 5日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⑦法律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을 경과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

第54條(豫算案의 審議·確定權, 議決期間徒過時의 措置) ①國會는 國家의 豫算案을 審議·확정한다.

②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90日전까지 國會에 제출하고, 國會는 會計年度 開始 30日전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까지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의 目的을 위한 經費는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수 있다.

1. 憲法이나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유지·운영
2. 法律上 支出義務의 이행
3. 이미 豫算으로 승인된 事業의 계속

第55條(繼續費, 豫備費) ①한 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年限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豫備費는 總額으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56條(追加更正豫算) 政府는 豫算에 變更을 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여 國會에 제출할 수 있다.

第57條(支出豫算 各項의 增額과 새 費目的 設置禁止)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 政府가 제출한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的을 設置할 수 없다.

第58條(國債募集등에 대한 議決權) 國債를 모집하거나 豫算외에 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政府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59條(租稅의 種目과 稅率)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 정한다.

第60條(條約·宣戰布告등에 관한 同意權) ①國會는 相互援助 또는 安全保障에 관한 條約, 중요한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 友好通商航海條約, 主權의 制約에 관한 條約, 講和條約, 國家나 國民에게 중대한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의 체결·批准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②國會는 宣戰布告, 國軍의 外國에의 派遣 또는 外國軍隊의 大韓民國 領域안에서의 駐留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第61條(國政에 관한 監査·調査權) ①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거나 특정한 國政事案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書類의 提出 또는 證人의 출석과 證言이나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②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62條(國務總理등의 國會出席) ①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國會나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國政處理狀況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陳述하고 質問에 응답할 수 있다.

②國會나 그 委員會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出席要求를 받은 때에는 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第63條(國務總理·國務委員 解任建議權) ①國會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解任建議는 國會在籍議員 3分の 1이상의 發議에 의하여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64條(國會의 自律權) ①國會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議事와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며,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

③議員을 除名하려면 國會在籍議員 3分の 2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第2項과 第3項의 處分에 대하여는 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

第65條(彈劾訴追權, 彈劾決定의 效力) ①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憲法裁判所 裁判官·法官·中央選舉管理委員會 委員·監查院長·監查委員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3分の 1이상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議決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에 대한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와 國會在籍議員 3分の 2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彈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彈劾審判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정지된다.

④彈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지는 아니한다.

第 4 章 政 府

第 1 節 大 統 領

第66條(大統領의 地位·責務, 行政權) ①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外國에 대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獨立·領土의 保全·國家의 繼續性과 憲法을 守護할 責務를 진다.

③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

④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속한다.

第67條(大統領의 選舉, 被選舉權) ①大統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 選舉에 의하여 選出한다.

②第1項의 選舉에 있어서 最高得票者가 2人이상인 때에는 國會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출석한 公開會議에서 多數票를 얻은 者를 當選者로 한다.

③大統領候補者가 1人일 때에는 그 得票數가 選舉權者 總數의 3分の 1이상 이 아니면 大統領으로 當選될 수 없다.

④大統領으로 選舉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舉權이 있고 選舉日 현재 40歲에 達하여야 한다.

⑤大統領의 選舉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68條(大統領選舉의 時期, 補闕選舉) ①大統領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에는 任期滿了 70日 내지 40日전에 後任者를 選舉한다.

②大統領이 闕位된 때 또는 大統領 當選者가 死亡하거나 判決 기타의 사유로 그 資格을 喪失한 때에는 60日이내에 後任者를 選舉한다.

第69條(大統領의 就任宣誓) 大統領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憲法을 준수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 및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 앞에 엄숙히 宣誓합니다.”

第70條(大統領의 任期) 大統領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第71條(大統領權限代行) 大統領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 法律이 정한 國務委員의 順序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72條(重要政策의 國民投票) 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外交·國防·統一 기타 國家安危에 관한 重要政策을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

第73條(外交·宣戰·講和權) 大統領은 條約을 체결·批准하고, 外交使節을 信任·접수 또는 派遣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한다.

第74條(國軍統帥權, 國軍의 組織·編成) ①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軍을 統帥한다.

②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 정한다.

第75條(大統領令) 大統領은 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委任받은 사항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大統領令을 발할 수 있다.

第76條(緊急處分·命令權) ①大統領은 內憂·外患·天災·地變 또는 중대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있어서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財政·經濟上의 處分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國家를 保衛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③大統領은 第1項과 第2項의 處分 또는 命令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國會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第3項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處分 또는 命令은 그때부터 效力을 喪失한다. 이 경우 그 命令에 의하여 改正 또는 廢止되었던 法律은 그 命令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效力을 회복한다.

⑤大統領은 第3項과 第4項의 사유를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77條(戒嚴) ①大統領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事上의 필요에 응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②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③非常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令狀制度,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④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戒嚴의 解除를 요구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第78條(公務員任免權)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을 任免한다.

第79條(赦免權) ①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赦免·減刑 또는 復權을 命할 수 있다.

②一般赦免을 命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赦免·減刑 및 復權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80條(榮典授與權)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勳章 기타의 榮典을 수여한다.

第81條(國會에 대한 意思表示) 大統領은 國會에 출석하여 發言하거나 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第82條(國法上 行爲 및 副署) 大統領의 國法上 行爲는 文書로써 하며, 이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관계 國務委員이 副署한다. 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第83條(兼職禁止) 大統領은 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겸할 수 없다.

第84條(刑事上 特權)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중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85條(前職大統領의 身分과 禮遇) 前職大統領의 身分과 禮遇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第 2 節 行 政 府

第 1 款 國 務 總 理 와 國 務 委 員

第86條(國務總理) ①國務總理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며, 行政에 관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한다.

③軍人は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總理로 任命될 수 없다.

第87條(國務委員) ①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委員은 國政에 관하여 大統領을 補佐하며, 國務會議의 構成員으로서 國政을 審議한다.

③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④軍人は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

第 2 款 國務會議

第88條(權限, 構成) ①國務會議은 政府의 權限에 속하는 중요한 政策을 審議한다.

②國務會議은 大統領·國務總理와 15人이상 30人이하의 國務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고, 國務總理는 副議長이 된다.

第89條(審議事項) 다음 사항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國政의 基本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2. 宣戰·講和 기타 중요한 對外政策
3. 憲法改正案·國民投票案·條約案·法律案 및 大統領令案
4. 豫算案·決算·國有財產處分の 基本計劃·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 기타 財政에 관한 중요사항
5. 大統領의 緊急命令·緊急財政經濟處分 및 命令 또는 戒嚴과 그 解除
6. 軍事에 관한 중요사항
7. 國會의 臨時會 集會의 요구
8. 榮典授與
9. 赦免·減刑과 復權
10. 行政各部間의 權限의 劃定
11. 政府안의 權限의 委任 또는 配定에 관한 基本計劃
12. 國政處理狀況의 評價·分析
13. 行政各部의 중요한 政策의 수립과 調整
14. 政黨解散의 提訴
15. 政府에 제출 또는 회부된 政府의 政策에 관계되는 請願의 審査
16. 檢察總長·合同參謀議長·各軍參謀總長·國立大學校總長·大使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과 國營企業體管理者의 任命
17. 기타 大統領·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제출한 사항

第90條(國家元老諮問會議) ①國政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元老로 구성되는 國家元老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家元老諮問會議의 議長은 直前大統領이 된다. 다만, 直前大統領이 없을 때에는 大統領이 指名한다.

③國家元老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1條(國家安全保障會議) ①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

②國家安全保障會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

③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2條(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①平和統一政策의 수립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3條(國民經濟諮問會議) ①國民經濟의 발전을 위한 重要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民經濟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民經濟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 3 款 行政各部

第94條(各부의 長) 行政各부의 長은 國務委員 중에서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95條(總理令·部令)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부의 長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律이나 大統領令의 委任 또는 職權으로 總理令 또는 部令을 발할 수 있다.

第96條(各부의 組織·職務) 行政各부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 정한다.

第 4 款 監査院

第97條(職務와 所屬)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律이 정한 團體의 會計 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第98條(構成) ①監査院은 院長을 포함한 5人이상 11人이하의 監査委員으로 구성한다.

②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③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

次に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第99條(檢査와 報告) 監査院은 歲入·歲出의 決算을 매년 檢査하여 大統領과 次年度國會에 그 結果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100條(組織·職務範圍등) 監査院의 組織·職務範圍·監査委員의 資格·監査對象公務員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 5 章 法 院

第101條(司法權, 法院의 組織, 法官의 資格) ①司法權은 法官으로 구성된 法院에 속한다.

②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法院으로 組織된다.

③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第102條(大法院의 組織) ①大法院에 部를 둘 수 있다.

②大法院에 大法官을 둔다. 다만,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法官이 아닌 法官을 둘 수 있다.

③大法院과 各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 정한다.

第103條(法官의 獨立)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104條(大法院長·大法官의 任命) ①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大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은 大法官會議의 同意를 얻어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第105條(法官의 任期·連任·停年) ①大法院長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②大法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③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④法官의 停年은 法律로 정한다.

第106條(法官의 身分保障) ①法官은 彈劾 또는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하며, 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停職·減俸 기타 不利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②法官이 重大한 心身上의 障害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하게 할 수 있다.

第107條(違憲提請, 命令등의 審査權, 行政審判) ①法律이 憲法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法院은 憲法裁判所에 提請하여 그 審判에 의하여 裁判한다.

②命令·規則 또는 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

③裁判의 前審節次로서 行政審判을 할 수 있다. 行政審判의 節次는 法律로 정하되, 司法節次가 準用되어야 한다.

第108條(大法院의 規則制定權) 大法院은 法律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訴訟에 관한 節次, 法院의 内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109條(裁判公開의 原則)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審理는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安寧秩序를 방해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110條(軍事裁判) ①軍事裁判을 관할하기 위하여 特別法院으로서 軍事法院을 둘 수 있다.

②軍事法院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관할한다.

③軍事法院의 組織·權限 및 裁判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④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은 軍人·軍務員의 犯罪나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哨所·有毒飲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중 法律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單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死刑을 宣告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6 章 憲法裁判所

第111條(權限과 構成등) ①憲法裁判所는 다음 사항을 管掌한다.

1.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 審判

2. 彈劾의 審判
3. 政黨의 解散 審判
4. 國家機關 相互間,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治團體 相互間的 權限爭議에 관한 審判
5. 法律이 정하는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
 - ②憲法裁判所는 法官의 資格을 가진 9人の 裁判官으로 구성하며, 裁判官은 大統領이 任命한다.
 - ③第2項의 裁判官중 3人は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は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
 - ④憲法裁判所의 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112條(裁判官의 任期, 政治關與禁止, 身分保障) ①憲法裁判所 裁判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 ②憲法裁判所 裁判官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關여할 수 없다.
- ③憲法裁判所 裁判官은 彈劾 또는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第113條(決定定足數, 組織과 運營) ①憲法裁判所에서 法律의 違憲決定, 彈劾의 決定, 政黨解散의 決定 또는 憲法訴願에 관한 認容決定을 할 때에는 裁判官 6人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 ②憲法裁判所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審判에 관한 節次,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 ③憲法裁判所의 組織과 運營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 7 章 選舉管理

第114條(選舉管理委員會) ①選舉와 國民投票의 公正한 管理 및 政黨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選舉管理委員會를 둔다.

- ②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3人, 國會에서 選出하는 3人과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3人の 委員으로 구성한다. 委員長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 ③委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④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⑤委員은 彈劾 또는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⑥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選舉管理·國民投票管理 또는 政黨事務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으며,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⑦各級 選舉管理委員會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115條(選舉管理委員會의 對行政機關指示權) ①各級 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人名簿의 작성등 選舉事務와 國民投票事務에 관하여 관계 行政機關에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指示를 받은 당해 行政機關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16條(選舉運動, 選舉經費) ①選舉運動은 各級 選舉管理委員會의 管理下에 法律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機會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選舉에 관한 經費는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第 8 章 地方自治

第117條(自治權, 地方自治團體의 種類)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利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고 財産을 관리하며, 法令의 범위안에서 自治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종류는 法律로 정한다.

第118條(地方自治團體의 組織·運營) ①地方自治團體에 議會를 둔다.

②地方議會의 組織·權限·議員選舉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運營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 9 章 經 濟

第119條(經濟秩序의 基本, 經濟의 規制·調整) ①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개인과 企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尊重함을 基本으로 한다.

②國家는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成長 및 安定과 적정한 所得의 分配를 유지하고, 市場의 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방지하며, 經濟主體間의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主化를 위하여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

第120條(天然資源의 採取·開發·特許 및 保護) ①鑛物 기타 중요한 地下資源·水産資源·水力과 經濟上 이용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期間 그 採取·開發 또는 이용을 特許할 수 있다.

②國土와 資源은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그 均衡있는 開發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計劃을 수립한다.

第121條(農地의 小作制度禁止, 農地의 賃貸借·委託經營) ①國家는 農地에 관하여 耕者有田의 원칙이 達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農地의 小作制度는 금지된다.

②農業生産性の 提高와 農地의 合理的인 이용을 위하여거나 불가피한 事情으로 발생하는 農地의 賃貸借와 委託經營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第122條(國土의 利用·開發制限과 義務賦課) 國家는 國民 모두의 生産 및 生活의 基盤이 되는 國土의 효율적이고 均衡있는 이용·開發과 보존을 위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制限과 義務를 課할 수 있다.

第123條(農·漁村綜合開發, 農·漁民 및 中小企業의 保護·育成) ①國家는 農業 및 漁業을 保護·육성하기 위하여 農·漁村綜合開發과 그 지원등 필요한 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地域間의 均衡있는 발전을 위하여 地域經濟를 육성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中小企業을 保護·육성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農水産物의 需給均衡과 流通構造의 개선에 노력하여 價格安定을 도모함으로써 農·漁民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國家는 農·漁民과 中小企業의 自助組織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自律的 活動과 발전을 보장한다.

第124條(消費者保護) 國家는 건전한 消費行爲를 啓導하고 生産品의 品質向上을 촉

구하기 위한 消費者保護運動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第125條(對外貿易의 育成과 規制·調整) 國家는 對外貿易을 육성하며, 이를 規制·調整할 수 있다.

第126條(私營企業의 國·公有化 또는 統制·管理의 禁止) 國防上 또는 國民經濟上 緊切한 필요로 인하여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經營을 統制 또는 관리할 수 없다.

第127條(科學技術의 革新·開發과 國家標準制度 確立) ①國家는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및 人力의 開發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國家標準制度를 확립한다.

③大統領은 第1項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諮問機構를 둘 수 있다.

第 10 章 憲法改正

第128條(改正提案과 效力) ①憲法改正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 또는 大統領의 發議로 提案된다.

②大統領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을 위한 憲法改正은 그 憲法改正 提案 당시의 大統領에 대하여는 效力이 없다.

第129條(改正案公告期間)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20日이상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30條(改正案의 議決과 確定·公布) ①國회는 憲法改正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60日이내에 議決하여야 하며, 國회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の 2이상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②憲法改正案은 國회가 議決한 후 30日이내에 國民投票에 붙여 國會議員選舉權者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憲法改正案이 第2項의 贊成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正은 확정되며,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附 則

第1條(시행일) 이 憲法은 1988年 2月 25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憲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律의 制定·改正과 이 憲法에 의한 大統領 및 國會議員의 選舉 기타 이 憲法施行에 관한 準備는 이 憲法施行 전에 할 수 있다.

第2條(最初の 大統領選舉時期와 任期) ①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選舉는 이 憲法施行日 40日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開始한다.

第3條(最初の 國會議員選舉時期, 이 憲法施行당시의 國會議員任期) ①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國會議員選舉는 이 憲法公布日로부터 6月 이내에 실시하며, 이 憲法에 의하여 選出된 최초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國會議員選舉후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로부터 開始한다.

②이 憲法公布 당시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第1項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 前日까지로 한다.

第4條(이 憲法 施行당시의 公務員등의 地位) ①이 憲法施行 당시의 公務員과 政府가 任命한 企業體의 任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憲法에 의하여 選任方法이나 任命權者가 변경된 公務員과 大法院長 및 監查院長은 이 憲法에 의하여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며, 이 경우 前任者인 公務員의 任期는 後任者가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한다.

②이 憲法施行 당시의 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③이 憲法중 公務員의 任期 또는 重任制限에 관한 規定은 이 憲法에 의하여 그 公務員이 최초로 選出 또는 任命된 때로부터 適用한다.

第5條(이 憲法 施行당시의 法令과 條約의 效力) 이 憲法施行 당시의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한 그 效力을 지속한다.

第6條(이 憲法 施行前에 設置된 機關에 관한 經過措置) 이 憲法施行 당시에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 設置될 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職務를 행하고 있는 機關은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운 機關이 設置될 때까지 存續하며 그 職務를 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2001. 05. 24 법률제648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유치 또는 수용하는 데 사용하는 시설
 - 다. 군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 및 헌병대영창을 포함한다)
 - 라. 외국인보호소
 - 마. 다수인보호시설
3. “다수인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수의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이 법이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통령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⑤위원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⑥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7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대통령은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시행일 2001·11·25]

제8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 (위원의 겸직금지) ①위원은 재직중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 ②인권위원회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 (퇴직 인권위원의 공직취임 제한) 위원은 퇴직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

제12조 (소위원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자문기구)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소속 직원중 5급 이상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①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9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국가기관과의 협의) ①관계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정부보고서 작성시 위원회 의견청취) 국제인권규약의 규정에 따라 관계국가기관이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조회를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청문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시설의 방문조사) ①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결로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직원을 동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위원 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방문 및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직원 및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이하 “시설수용자”라 한다)와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 등이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할 수 있다. 다만,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⑥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①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26조 (인권교육과 홍보) ①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 (인권자료실) ①위원회는 인권자료실을 둘 수 있다.

②인권자료실은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정리·보존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인권자료실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으로 본다.

④인권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①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조사 또는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9조 (보고서 작성 등) ①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에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③관계기관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의견,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

제30조 (위원회의 조사대상) ①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 우대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③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①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 공무원 등”이라 한다)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설수용자가 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속 공무원 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보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발급 받는 즉시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 혹은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구급·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

면으로 진정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때 진정을 접수한 위원 등은 즉시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등의 구금·보호시설의 방문 및 진정의 접수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진정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⑦소속 공무원 등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할 수 없다.

⑧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보호시설에서 이행하여야 할 조치 및 그 밖의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진정의 각하 등) ①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 9.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 10. 진정의 취지가 당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을 관계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 ④위원회는 진정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제33조 (다른 구제절차와 이송) ①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진정을 그 다른 국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관할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진정을 이송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 (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①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 (조사의 목적) ①위원회의 조사는 국가기관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 (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
4. 당사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②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행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는 “관계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⑦위원회가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

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당해 자료·물건 또는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관계 국가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소명하고 그 자료·물건의 제출이나 그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인 경우
2. 범죄수사나 계속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7조 (질문·검사권) ①위원회는 제36조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소재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제3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 (위원의 제척 등) ①위원과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39조 (진정의 기각)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사실이 아닌 경우
2.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 (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1조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위원회가 회부한 조정을 심의·의결한다.

③조정위원중 2인은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1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가 위촉하되 비상임으로 하며, 조정위원 3인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④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⑤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 및 위원회의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 (조정) ①위원회는 진정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하고 제40조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진정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조정은 조정절차의 개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중에 당사자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조정위원회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당사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43조 (조정의 효력)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과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4조 (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 (고발 및 징계권고)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

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위원회는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조치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7조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①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의 요청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①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가 계속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9조 (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50조 (처리결과의 공개) 위원회는 이 장에 의한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 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장 보 칙

제51조 (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자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4조 (공무원 등의 파견)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 등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5조 (불이익 금지와 지원)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별 칙

제56조 (인권옹호업무방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2.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3. 위계로써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4. 이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타인의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②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57조 (진정서작성 등의 방해)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시행일 2001·11·25]

제58조 (자격사칭)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 (비밀누설) 제5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60조 (긴급구제조치방해)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하는 조치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 (비밀침해) 제31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침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②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권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②(인권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인권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③(대통령령의 제정) 위원장은 국무총리에게 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1948. 12. 10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으며,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의 친선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긴급하며,

국제연합의 여러 국민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달성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이들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러한 서약의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따라서 이제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 및 회원국 관할하의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국가에 대한 공통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 국가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1.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추의 경우에는 활용될 수 없다.

제15조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16조 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혼인 기간 중 및 그 해소시 혼인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2. 결혼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 제21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하여 표현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제23조** 1.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

-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제27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다.

제30조 이 선언의 그 어떠한 조항도 특정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시민적, 정치적 자유 및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 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의 조문들에 합의한다.

제 1 부

- 제1조** 1. 모든 사람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사람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적 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동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 2 부

- 제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 (a)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할 것.
 - (b)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
 - (c)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확보할 것.

제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 제4조** 1.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되어 있을 때에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당해국의 국제법상의 여타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항의 규정은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5조, 제16

조 및 제18조에 대한 위반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행사하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위반하는 규정 및 위반하게 된 이유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규약의 타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지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위반이 종료되는 날에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그 내용을 통지한다.

- 제5조** 1.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의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부

- 제6조** 1.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서 또한 이 규약의 규정과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의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 이 형벌은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하여서만 집행될 수 있다.
3. 생명의 박탈이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이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고 있는 의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4.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형선고에 대한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은 모든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
5. 사형선고는 18세 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되며, 또한 임신부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아니된다.

6.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사형의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원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1.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 매매는 금지된다.

2.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3. (a)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b) 제3항 “(a)”의 규정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c) 이 항의 적용상 “강제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i) “(b)”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작업 또는 의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 석방 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ii) 군사적 성격의 의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의무

(iii)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는 의무

(iv)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의무

제9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통고받는다.

3.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1.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2. (a) 피고인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격리되며, 또한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

(b)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

3.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

제11조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12조 1.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자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3. 상기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양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4.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합법적으로 이 규약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그 영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으며, 또한 국가안보상 불가피하게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고 또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동 당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명된 자에 의하여 자기의 사안이 심사되는 것이 인정되며, 또한 이를 위하여 그 당국 또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이 그를 대리하는 것이 인정된다.

제14조 1.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도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서는, 민주 사회에 있어서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견해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 기타 소송에서 선고되는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절차가 혼인관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문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

2.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a) 그에 대한 죄의 성질 및 이유에 관하여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받을 것

(b)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것

(c)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것

(d)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으며, 또한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것.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통지를 받을 것.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나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법적 조력이 그에게 주어지도록 할 것

- (e) 자기에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할 것과 자기에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기를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신문받도록 할 것
 - (f)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 (g) 자기에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
4.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그들의 연령을 고려하고 또한 그들의 갱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5.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어떤 사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 발견된 사실에 의하여 오심이 있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또는 사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결과 형벌을 받은 자는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다만, 그 알지 못한 사실이 적시에 밝혀지지 않은 것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서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1.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범죄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후에 보다 가벼운 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는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사회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행위시에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당해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

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20조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22조 1.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이 조는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하는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제23조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인정된다.
3. 혼인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 없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혼인 기간 중 및 혼인 해소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혼인 해소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필요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24조 1.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어린이는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진다.
3.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모든 시민은 제2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 (b)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
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
되는 것
- (c)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제27조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 4 부

제28조 1. 인권이사회(이하 이 규약에서 이사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사회는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하에 규정된 임무를 행한다.

2. 이사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인권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이 규약의 당사국의 국민들로 구성하고, 법률적 경험을 가진 약간명의 인사의 참여가 유익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3. 이사회는 위원은 개인적 자격으로 선출되고, 직무를 수행한다.

제29조 1. 이사회는 위원은 제28조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선거를 위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2인 이하의 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지

- 명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3. 동일인이 재지명 받을 수 있다.

- 제30조** 1. 최초의 선거는 이 규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34조에 따라 선언된 결원의 보충선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를 구성을 위한 각 선거일의 최소 4개월 전에, 이 규약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위원후보 지명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국에 서면 초청장을 발송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들을 지명국 이름의 명시와 함께 알파벳 순으로 명단을 작성하여 늦어도 선거일 1개월 전에 동 명단을 이 규약당사국에게 송부한다.
4. 이사회 위원의 선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국제연합 본부에서 소집한 이 규약당사국 회합에서 실시된다. 이 회합은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를 정족수로 하고,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획득하는 후보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 제31조** 1. 이사회는 동일국가의 국민을 2인 이상 포함할 수 없다.
2. 이사회 선거에 있어서는 위원의 공평한 지리적 안배와 상이한 문명 형태 및 주요한 법률체계가 대표되도록 고려한다.

- 제32조** 1. 이사회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모든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9인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된다. 이들 9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 후 즉시 제30조 제4항에 언급된 회합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2. 임기 만료시의 선거는 이 규약 제4부의 전기 조문들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 제33조** 1. 이사회 어느 한 위원이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일시적 성격의 결석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이라고 다른 위원 전원이 생각할 경우, 이사회 의장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하며, 사무총장은 이때 동 위원의 궐석을 선언한다.

2. 이사회의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한 경우, 의장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사망일 또는 사임의 효력발생일로부터 그 좌석의 궐석을 선언한다.

제34조 1. 제33조에 의해 궐석이 선언되고, 교체될 궐석위원의 잔여임기가 궐석 선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이를 통보하며, 각 당사국은 궐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제29조에 따라서 2개월 이내에 후보자의 지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알파벳 순으로 작성, 이를 이 규약의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보궐선거는 이 규약 제4부의 관계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3. 제33조에 따라 선언되는 궐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선출되는 위원은 동조의 규정에 따라 궐석위원의 잔여임기 동안 재직한다.

제35조 이사회의 위원들은 국제연합 총회가 이사회의 책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에서 동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수를 받는다.

제36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정상 이사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제37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최초 회의를 국제연합본부에서 소집한다.

2. 최초 회의 이후에는, 이사회는 이사회의 절차규칙이 정하는 시기에 회합한다.

3. 이사회는 통상 국제연합본부나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사무소에서 회합을 가진다.

제38조 이사회의 각 위원은 취임에 앞서 이사회의 공개석상에서 자기의 직무를 공평하고 양심적으로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제39조 1. 이사회는 임기 2년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2. 이사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제정하며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a) 의사정족수는 위원 12인으로 한다.

(b) 이사회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투표로 한다.

제40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그러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a) 관계당사국에 대하여는 이 규약의 발효 후 1년 이내

(b) 그 이후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때

2.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며 사무총장은 이를 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송부한다. 동 보고서에는 이 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사회와의 협의 후 해당 전문기구에 그 전문기구의 권한의 분야에 속하는 보고서 관련 부분의 사본을 송부한다.

4. 이사회는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한다. 이사회는 이사회 자체의 보고서와 이사회가 적당하다고 간주하는 일반적 의견을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이사회는 또한 이 규약의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 사본과 함께 동 일반적 의견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5. 이 규약의 당사국은 본 조 제4항에 따라 표명된 의견에 대한 견해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4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이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 당사국의 통보를 접수, 심리하는 이사회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을 이 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이 조의 통보는 이 규약의 당사국 중 자국에 대한 이사회 권한의 인정을 선언한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될 경우에만 접수, 심리될 수 있다. 이사회는 그러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에 관한 통보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조에 따라 접수된 통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a) 이 규약의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이 규약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문제에 관하여 그 당사국

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통보를 접수한 국가는 통보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를 해명하는 설명서 또는 기타 진술을 서면으로 통보한 국가에 송부한다. 그러한 해명서에는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동 국가가 당해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취하였든가, 현재 취하고 있든가 또는 취할 국내절차와 구제수단에 관한 언급이 포함된다.

- (b) 통보를 접수한 국가가 최초의 통보를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가 관련당사국 쌍방에게 만족스럽게 조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당사국 중 일방에 의한 이사회와 타 당사국에 대한 통고로 당해 문제를 이사회에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 (c) 이사회는, 이사회에 회부된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모든 가능한 국내적 구제절차가 원용되고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다음에만 그 문제를 처리한다. 다만, 구제수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d) 이사회가 이 조에 의한 통보를 심사할 경우에는 비공개 토의를 가진다.
- (e) “(c)”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는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기초 위에서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 (f) 이사회는 회부받은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b)”에 언급된 관계당사국들에게 모든 관련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g) “(b)”에서 언급된 관계당사국은 당해 문제가 이사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동안 자국의 대표를 참석시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 (h) 이사회는 “(b)”에 의한 통보의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 (i) “(e)”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보고서를 사실과 도달된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시킨다.
- (ii) “(e)”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보고서를 사실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시키고 관계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과 구두 의견의 기록을 동 보고서에 첨부시킨다. 모든 경우에 보고서는 관계당사국에 통보된다.

2. 이 조의 제규정은 이 규약의 10개 당사국이 이 조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하

였을 때 발효된다. 당사국은 동 선언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사무총장은 선언문의 사본을 타 당사국에 송부한다. 이와 같은 선언은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이 철회는 이 조에 의하여 이미 송부된 통고에 따른 어떠한 문제의 심의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당사국에 의한 추후의 통고는 사무총장이 선언 철회의 통고를 접수한 후에는 관계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되지 아니한다.

제42조 1. (a) 제41조에 따라 이사회에 회부된 문제가 관계당사국들에 만족스럽게 타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관계당사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 특별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이 규약의 존중에 기초하여 당해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b) 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국에게 모두 수락될 수 있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관계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조정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성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보지 못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비밀투표에 의하여 인권이사회 위원 중에서 인권이사회 위원 3분의 2의 다수결 투표로 선출된다.

2.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동 위원은 관계당사국, 이 규약의 비당사국 또는 제41조에 의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조정위원회는 자체의 의장을 선출하고 또한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4.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본부 또는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사무소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동 회의는 조정위원회가 국제연합 사무총장 및 관계당사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기타 편리한 장소에서도 개최될 수 있다.

5.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이 조에서 임명된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도 역무를 제공한다.

6. 이사회가 접수하여 정리한 정보는 조정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국에게 기타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조정위원회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 또는 당해 문제를 접수한 후, 어떠한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에, 관계당사국에 통보하기 위하여 인권이사회의 위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 (a) 조정위원회가 12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에 대한 심의를 종료할 수 없을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를 당해 문제의 심의현황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국한시킨다.
 - (b) 조정위원회가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의 존중에 기초하여 당해 문제에 대한 우호적인 해결에 도달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를 사실과 도달한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국한시킨다.
 - (c) 조정위원회가“(b)”의 규정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보고서는 관계당국간의 쟁점에 관계되는 모든 사실문제에 대한 자체의 조사결과 및 문제의 우호적인 해결 가능성에 관한 견해를 기술한다. 동 보고서는 또한 관계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 및 구두 의견의 기록을 포함한다.
 - (d) “(c)”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되는 경우, 관계당사국은 동 보고서의 접수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권이사회의 위원장에게 조정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의 수락 여부를 통고한다.
8. 이 조의 규정은 제41조에 의한 이사회의 책임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9. 관계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제출하는 견적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모든 경비를 균등히 분담한다.
10.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 제9항에 의하여 관계당사국이 분담금을 납입하기 전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43조 이사회의 위원과 제42조에 의하여 임명되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계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한 직무를 행하는 전문가로서의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44조 이 규약의 이행에 관한 규정은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의 설립헌장 및 협약에 의하여 또는 헌장 및 협약하에서의 인권 분야에 규정된 절차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이 규약당사국이 당사국간에 발효 중인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정에 따라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른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이사회는 그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한다.

제 5 부

제46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에서 취급되는 문제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과 전문기구의 책임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 국제연합 헌장 및 전문기구 헌장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47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사람이 그들의 천연적 부와 자원을 충분히 자유로이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6 부

제48조 1. 이 규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전문기구의 모든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모든 당사국 또한 국제연합 총회가 이 규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한 기타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규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규약은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제49조 1. 이 규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에 이 규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이 조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이 규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50조 이 규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5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고,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규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52조 제48조 제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없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동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a) 제48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b) 제49조에 의한 이 규약의 발효일자 및 제51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발효일자

제53조 1. 이 규약은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규약의 인증 등본을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서명자들은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1966년 12월 19일 뉴욕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이 규약에 서명하였다.

UN 경찰관 행동강령

(1979 UN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제1조 경찰관은 법에 의한 의무를 늘 이행하여야 하며, 자신의 업무가 요구하는 최대한의 책임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한다.

제2조 임무이행에서 경찰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지키고 돌본다.

제3조 경찰관은 엄격히 필요한 경우에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도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의무이행이나 정의의 요구가 엄격히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경찰관이 알게 된 기밀적 성격의 사안은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제5조 어떠한 경찰관도 고문이나 다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혹은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의 행위를 가하고, 선동하거나 묵인할 수 없다. 또한 경찰관은 상관의 명령, 혹은 전시나 전쟁의 위협, 국가안보의 위협, 국내정치 불안정 혹은 여타 공공비상시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고문이나 다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혹은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정당한 사유로 삼아서는 안된다.

제6조 경찰관은 자신의 보호 아래 구금상태에 있는 자의 건강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제7조 경찰관은 부정부패를 지지해서는 안된다. 경찰관은 그러한 모든 부정부패를

단호히 대처하여야 한다.

제8조 경찰관은 법률과 실정법을 준수한다. 이들은 또한 자신의 최대한의 능력으로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이 강령의 위반이 있었거나 발생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경찰관은 재심이나 구제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급기관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여타 적절한 기관이나 기구에 보고한다.

국제사면위원회 경찰관 인권지침

(10 Basic Human Rights Standards for Law Enforcement
Official, Amnesty International)

제1조 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어떤 사유로도 동등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특히, 폭력과 협박의 위협에 처한 사람은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 경찰관은 특히 어린이·노인·여성·피난민·가출인 및 사회적 수수 등 폭력과 협박의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큰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

제2조 경찰관은 모든 범죄 피해자를 “연민과 존중”을 가지고 대해야 하며, 특별히 그들의 안전과 사생활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제3조 경찰관은 오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더라도 상황에 따른 필요최소한 정도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경찰관은 불법적이지만 집회나 시위를 통제할 때에는 가급적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폭력적인 집회를 해산할 대에도 오직 필요최소한의 물리력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경찰관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기 등 살상용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6조 경찰관은 법적인 근거없이 어느 누구도 체포해서는 안되며, 체포를 할 경우에는 적법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경찰관은 체포 즉시 체포된 사람이 가족과 변호인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해주어

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주어야 한다.

제8조 체포 또는 구금된 모든 사람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한다. 경찰관은 결코 어떤 경우에도 고문 혹은 기혹행위를 행하거나 조장하거나 묵과해서는 안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지시·명령도 거부하여야 한다.

제9조 경찰관은 결코 “초법적 처형”을 행하거나 사람을 “행방불명”되게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지시하거나 은폐하거나 은폐해서도 안된다. 또한 이에 대한 어떠한 지시·명령도 거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경찰관은 위 기본인권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이를 반드시 상급자나 검찰, 혹은 인권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권한 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록 7>

경찰의 인권침해 진정사례 정리

(1) 경찰관련 진정사유별 현황(2001.11.26 ~ 2005.3.31)

유형별 접수사건 2,436											
분 류	연도별					분 류	연도별				
	'01 ~'02	'03	'04	'05	계		'01 ~'02	'03	'04	'05	계
과도한 불심검문	4	8	7	5	24	인격권침해	54	77	127	33	291
불법/부당 도-감청	3	1	1	-	5	의료권 방해/제한	9	8	13	3	33
불법/부당 압수수색	14	9	12	1	36	피해자보호조치미흡	9	10	7	1	27
불법/감시검열	21	7	3	-	31	과도한신체검사	2	-	1	-	3
과잉진압	9	23	9	1	42	불법/부당 감금	12	13	15	4	44
피의자 권리 미고지	14	19	17	4	54	강압/부당 증거확보	23	15	4	-	42
가족 등에 대한 미통지	-	2	3	1	6	수사미진	51	34	42	29	156
불법/부당 임의동행	20	10	2	-	32	편파수사	124	75	38	16	253
별건 체포/구속	8	2	5	-	15	수사오류	41	22	6	4	73
체포요건 결여	25	31	17	13	86	공소권 남용	11	2	-	-	13
함정수사	6	-	2	1	9	내사/피의사실 유포	7	4	6	-	17
과도한 총기/장구사용	16	11	39	7	73	전과기록 미삭제	3	2	-	-	5
접견/교통권 제한	4	5	8	-	17	알권리 침해	2	-	2	-	4
폭행	144	155	202	44	545	간접피해	2	3	-	-	5
가혹행위	98	66	17	3	184	기타	103	88	83	37	311

(2) 수사활동에 있어서의 인권침해

□ 피의자의 권리 불고지

- 범죄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지도 않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지 않고 변명의 기회를 주지도 않고 강제연행
-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피의자가 담당경찰관에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죄질이 나빠 신문을 해도 소용이 없다며 신문신청권의 포기를 종용하고 신문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서류 작성
-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가족에게 실질심사 청구권이 있음을 알리지 않음

□ 체포와 관련된 인권침해

-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긴급체포에 의해 체포, 연행된 경우
 - 도주를 준비한 흔적이 없이 새벽 6시 30분경 집에서 잠을 자는 상황에서 긴급체포
 - 오후 4시 30분 구청장실에서 집무 중 긴급체포
- 현행범이 아닌데도 영장 없이 체포, 연행된 경우

□ 영장 없는 압수수색

- 압수수색영장의 제시 없이 가택과 사무실 수색
- 영장 없이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안을 수색함으로써 공포심을 조성한 후 물건들을 가져 간 사례
- 아무도 없는 시간에 드릴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압수수색 실시
- 노동자회 사무실에 철문을 드릴로 뚫고 사무실 벽을 뜯고 침입하여 컴퓨터와 상담자료, 책 등을 압수해 간 사례

□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수사

- 장애인 이동권보장을 위한 시위 도중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상해를 당하고 연행 과정에서 목발압수, 알몸수색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경찰서장 등을 고발
 - 장애인에게 목발은 발과 같은데 목발을 빼앗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주장
- 강간 피해자인 농아자가 수사과정에서 수화통역사 없이 진술하다가 나중에 수화가 서툰 통역사를 통해 진술하여 통역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게 되어 가해자가 불기소로 풀려나게 되었다가 나중에 재수사를 받고 기소
- 외국인에 대한 수사시 통역의 미숙으로 수사에 차질
- 정신박약자로서 경찰의 가혹행위에 의해 자백

□ 총기 등 경찰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 도주하던 피의자에게 총기를 사용하여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
 - 성폭행피의자가 검거를 피해 달아나다 뒤따라가던 경찰관이 쏜 권총에 아랫배 관통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으나 숨짐
- 시위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부상
- 시위중 경찰의 곤봉과 방패에 맞아 부상

□ 변호인의 접견권 제한

-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가 변호인의 접견을 요청하였으나 피의자에게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접견 거부
-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

□ 고문

- 고문은 인간에 대한 파괴를 가져오는 것으로 그 후유증은 크기 때문에 일찍부터 금지
 - 1, 2심 재판에서 살인혐의로 실형을 받고 대법원상고 중에 있던 피고인이 진범이 잡힘으로써 석방
 - 구속 당시 피고인은 현직 경찰관의 신분이었으나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연행되어 3일동안 3시간만 잠을 잔 상태에서 회유와 협박을 받다가 자백하였으나 대법원 재판중 진범이 잡힘
- 어린이 유괴 살인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실시한 결과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손목이 수갑에 눌러 생긴 멍자국, 왼쪽 무릎 안쪽에 바닥에 비벼져 생긴 상처가 아물어 나타난 흉터, 왼쪽 발 두번째 발가락 발톱 밑에 피멍 확인
 - 수사과정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범인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재판부의 신체검증에서도 고문사실이 확인되어 무죄선고

□ 수사과정의 불법행위

- 수사과정에서 강압적인 수사, 밤샘수사, 회유 협박 등 불법행위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발생
 - 여름에 냉방이 되지 않는 조사실에서 새벽 1시까지 조사하고 다시 새벽에 일찍 불러 사실상 잠을 못 자게 하거나, 조사관들이 번갈아가며 밤샘조사를 하여 잠을 자지 못하게 한 사례
 - 하루종일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함
 - 말하지 않으면 배후인물도 구속시킨다고 협박
 - 자백하면 같이 구속되어 있는 처와 처제를 풀어주겠다고 회유
- 간경화로 인해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며 안정을 취하지 않은 채 수사를 강행할 경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 강행, 구치소 이감 후에도 통원치료를 불허
- 만성디스크로 평소에도 제대로 서있거나 걸기도 힘들어하며 오래 앉아 있지 못하는 상태인 환자에 대하여 눕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조사를 강행, 병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하여 병이 악화
- 진료팀과 변호사가 왕진 및 접견차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면회 불허

□ 피의사실 유포로 인한 인권침해

- 가정교사인 피해자를 고등학생인 가해자가 자신의 침대방에서 강제로 강간하고 거실에서 목을 졸라 죽이고 옥상 입구 앞 공간에서 칼로 찌르고, 승강기를 이용해 위 피해자를 아파트 옆 공터에 버린 사건에서 피의자 진술조서를 기자에게 보여줌으로써 ‘한국판 개인교수’ 식의 선정적인 보도가 되도록 하고 피해자의 불륜한 성행위가 빚어낸 단순살인사건으로 왜곡되도록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훼손
-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의 발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침해

□ 불공정한 수사 및 인권보호 미흡

- 술집 주인과 다툼이 생겨 무허가 주점이라는 신고를 한 신고자를 폭행하고 파출소로 연행한 후 목격자의 진술을 왜곡하고, 조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장 쪽지를 강요하고 부인이 남편이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진술서를 썼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심리적 압박 가함
- 대학생과 조직폭력집단과 술집에서 다툼이 생겨 일방적으로 야구 배트 등 흉기로 구타를 당하여 상처를 입고 일행의 일부는 납치, 감금되어 폭행을 당함
 - 검거된 조직폭력집단의 간부가 파출소에서 “내가 징역을 가게되면 동생들을 시켜서 칼로 너를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조사받는 동안에도 협박을 당하였으나,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해자의 검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납치·감금 사실을 누락하는 등 경찰의 사건 축소 의혹
- 불필요한 대질심문으로 피해자의 공포심을 조성시켜 합의를 유도
- 불안에 떠는 피해자에게 경찰에서는 아무런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주소와 전화번호 이름과 얼굴 등을 노출시키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보복의 우려
- 피해자의 보호조치 요청 무시
-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가해자측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듣고 사건을 처리한 후 재조사 해당 경찰관 징계
 - 목격자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지 않아 일방적인 사건 처리라는 의혹
 - 도로교통안전협회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이 합동으로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짐

(2) 경비활동에 있어서의 인권침해

□ 집회·시위에서의 경찰력의 불법적 사용

- 집회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경찰서장의 지휘로 해산에 나섰던 경찰들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해산 통보를 한 뒤 5분의 시간을 주고 방패와 곤봉을 이용하여 무력진압
 - 이 과정에서 50대의 노동자 다수가 방패로 온 몸을 찍히고 곤봉으로 구타
 - 시민 1인과 여성 참가자 2인이 전투경찰들에 의해 성추행
 -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시민도 집회현장을 구경하다가 전경들에 의해 참가자들과 함께 연행
- 경찰에 신고된 합법적인 철거반대집회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곤봉과 방패를 사용한 진압 뿐만 아니라 발길질과 주먹질, 모래와 물까지 동원하여 진압
 - 이 과정에서 부상자 다수 발생
 - 얼굴을 구타당해 치아 2개가 완전히 뽑혀 나가는 부상
 - 곤봉에 맞아 머리가 깨져 병원에 긴급 후송
- 조사과정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자 강제로 수갑을 채워 5-6명의 전경을 시켜 사지를 붙들고 몸을 공중으로 띄워 지문을 채취하여 신원조회 실시
- 조사 만료시간이 되자 연행자들을 강제로 끌고나와 강제·강압수사 진행
- 전원에게 미란다 원칙 미고지

□ 불법 감청 등 사생활 침해

- 합법적인 전화감청의 증가와 함께 불법 감청과 카메라 설치 등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 증가
 - 학생시위와 관련하여 수배자의 여자친구 자취방에 설치된 도청장치가 발견
 - 공판 과정에서 검사가 도청사실을 발설
 - 불법적인 감청은 증거의 확보가 쉽지 않은 사건에서 많이 발생

□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 대학에 들어가려는 학생에게 전경이 앞을 막고 학생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주변의 전경들이 합세하여 강제로 데리고 가서 가방을 열고 내용물을 열어 본 경우
- 경찰의 불심검문에 항의해서 검문 자체를 거부한 학생들과 불심검문 거부운동을 벌인 학생들로 대부분의 학생들을 임의동행 유효시간인 6시간 내에 석방됨
- 99년 8월 서울대에서 치러진 범민족대회 관련해서 강제연행되었던 시민과 학생들이 집단소송을 제기
 - 이들 중 다수는 등산객들이었으며 임신부도 있었음
- 영장을 발급받지 않고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수사기관에 연행한 다음 조사가 끝날 때까지 수사기관에 유치시키는 이른바 임의동행의 관행이 보편적으로 이용
 - 피의자의 동의란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사실상 납치하듯이 연행하였으면서도 피의자의 동의를 가장하는 경우 발생

(3) 구금과 관련된 인권침해

□ 불법적인 장구의 사용

- 일부 지역에서 족쇄를 사용하여 피의자들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장구사용이 문제
 -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 뿐 아니라 단순과실범과 도주우려가 없는 군의원 등 초범들에게 족쇄와 자물쇠가 달린 쇠사슬까지 사용
 - 기초의원내 출마,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면회시 족쇄를 채워 심한 모멸감
 - 접촉사고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다른 피의자를 검찰로 호송하면서 발목에 족쇄를 채워 인권을 침해

□ 경찰서 유치장 운영상의 인권침해

- 경찰서내 유치장의 시설도 문제가 됨. 유치장의 침구 등을 세탁하지 않아 비위생적이라는 진정 제기
- 유치장의 화장실 사용이 인권을 침해

□ 피의자 알몸 수색

- 선거법 위반행위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연행한 여성들에 대하여 자해용 도구를 찾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알몸수색 실시
 - 경미한 사건으로 흉기를 소지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피의자들에 대한 과도한 수색
 - 여성 노동자 3명이 민주노총 소식지를 조합간부에게 전달하려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간단한 몸수색을 마친 뒤 유치장에 수감된 후 같은 날 변호사와의 면회를 마친 이들에게 다시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에 몸수색 실시
 - 이 과정에서 상의를 모두 벗고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라고 지시한 후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알몸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몸수색 실시